

헌법역사기행으로 배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사 자료집

1941년 대한민국건국강령

[건국강령] 3장

- 파면권, (국민)입법권, 사회조직 가입 보장
- 18세 선거권, 23세 피선거권
- 12세 이상 고등교육 무상
- 노동자, 농민 의료비 무상
- 교통, 통신, 전기, 은행은 국영, 공영으로 함



주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재) 교육과 미래
협력: (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CONTENTS

헌법역사기행으로 배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사 자료집

I. 인사말 : 헌법역사기행으로 배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사를 시작하면서

II. 헌법역사현장 탐방 순서

- (1) 성공회 성당 - 6월 항쟁과 87년 직선제, 경제민주화 헌법 9
- (2) 서울시 의회(구 태평로 국회의의사당)
 - 이승만, 박정희의 장기집권 야욕에 짓밟힌 민주적 사회국가 헌법 12
- (3) 덕수궁과 고종의 길 - 황제국 선포로 좌절된 입헌군주제 20
- (4) 4.19 혁명기념 도서관 - 혁명으로 다시 세운 민주공화국 23
- (5) 경교장 -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 27
- (6) 중앙청 -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함께 추구한 광복헌법 ... 32
- (7) 광화문 광장 - 촛불혁명으로 다시 시작된 민주적 사회국가의 꿈,
직접민주제로 앞당기자 36
- (8) 경복궁 역 (한성임시정부 유적지) -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공화제 ... 38
- (9) 그 밖의 헌법 관련 유적지 40

III. 헌정사 45

IV.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국민개헌원탁회의의 활동소개 82

인사말

헌법역사기행으로 배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사를 시작하면서

국민참여 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연 성 수**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 통제 시스템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을 바로 알아야 국민은 타고난 권리를 지킬 수 있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몰라야 통치하기 쉬우므로 지금까지 불의한 권력들은 헌법 교육을 회피해 왔습니다.

또한 헌법이 왜곡될수록 국민을 수탈하는데 용이하므로 부패한 권력은 헌법을 폭력적으로 개악해 왔습니다.

제헌헌법 이래 우리 헌법은 10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4. 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직후에 개정된 헌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8차례 개헌이 모두 독재 권력의 합법화 가장 및 장기집권용 개헌이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나 쉽게 누리는 알 권리, 말할 권리, 투표할 권리, 시위할 권리, 최저 임금제와 인간답게 살 권리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조항은 그냥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 헌법 한 조항 한 조항마다 독재권력의 비열한 음모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시민들의 피눈물나는 역사가 낱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에서 고문을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2항은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최저임금제가 규정된 헌법 제 32조는 전태일 열사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물인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핏빛 민주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각의 헌법 개정 과정에 얽힌 이야기를 추적해 보니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재) 교육과 미래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협력을 받아 아래와 같이 <헌법역사기행으로 배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두 시간 정도의 짧은 탐방 시간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사를 조금이나마 몸으로 체험하는 의미 있는 경험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5일

• 헌법 역사 기행을 하며 생각해 볼 것들 •

1. 삼일혁명 이후 대한국민이 추구해온 민주공화국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2. 대한민국 임시헌장, 건국강령, 제헌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의 꿈은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나요?
3. 4. 19 혁명, 6월 민주항쟁, 79년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한 촛불 혁명의 양대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역사현장 탐방 해설



헌법역사현장 탐방 순서

해설 | 조 정 찬 (국회개헌특위 전 자문위원)

연 성 수 (국민참여 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진행 | 백 선 기 (국민참여 개헌시민행동 운영위원장)

1. **성공회 성당** - 6월 항쟁과 87년 직선제, 경제민주화 헌법
2. **서울시 의회** 구 태평로 국회의사당 - 이승만, 박정희의 장기집권 야욕에 짓밟힌 민주적 사회국가 헌법
3. **덕수궁과 고종의 길** - 황제국 선포로 좌절된 입헌군주제
4. **4.19 혁명기념 도서관** - 혁명으로 다시 세운 민주공화국
5. **경교장** -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
6. **중앙청** -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함께 추구한 광복헌법
7. **광화문 광장** - 촛불혁명으로 다시 시작된 민주적 사회국가의 꿈, 직접민주제로 앞당기자
8. **경복궁 역**(한성임시정부 유적지) -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공화제

향후 일정 계획(4회)

일 정	주 요 내 용
5/25	13 차 헌법역사기행 및 헌정사교육
6/15	14 차 헌법역사기행 및 헌정사교육
8/24	15 차 헌법역사기행 및 헌정사교육
9/21	16 차 헌법역사기행 및 헌정사교육

(1) 성공회 주교좌 성당 : 6월 항쟁과 87년 헌법

1. 성공회 성당- 87년 호헌 철폐- 독재 타도-민주헌법쟁취의 진원지



- 건물 해설 : 1926년 완공, 로마네스크 양식, 사제관은 한옥양식 존중
- 성공회 : 영국에서 시작된 개신교로 성공회라는 이름은 사도신경의 ‘거룩한 보편교회’(The Holy Catholic Church)를 한자로 옮긴 것
- 선교전략은 성서, 이성, 전통 존중
- 1980년대 나눔의 집 설립, 후반 도시빈민활동
- 1987년 6월 항쟁 당시 집회 장소를 빌려 준 것도 사회선교의 일환

영국과 우리나라

- 구 한말 제국주의 침탈전에서 영일동맹 구축/ 러시아 견제 : 거문도 사건
- 만주사변 이후 영일동맹 파기
- 신탁통치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1948년 정부수립 즉시 승인
- 6.25 참전 : 육해공 56,000명 전사 1,078명 등 인명피해

2. 87년 6월 민주항쟁 과정



-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1987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도미사 도중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음을 폭로
- 이한열 열사 ; 6.9 최루탄 피격 7.5 사망, 7.9 시청앞 영결식 수십만 운집
- 6.10「박종철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시작
- 오후 5시 호헌철폐 미사, 6시 42회의 타종과 함께 시작/ 경적 시위, 흰 손수건, 넥타이 부대
 - 42회 타종의 의미 : 해방 42주년/ 민주화와 평화통일 염원

- 민주화에는 경제민주화도 포함됨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한 축이 노동, 농민, 도시빈민
- 7,8월 노동자 대투쟁 (3000개 이상 노조 신설, 하루 평균 22개 결성(8월 한 달) 2년 만에 103만명에서 170만명으로 증가하고 노조조직률은 15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승(2017년 10.7%)

※ 4.13 호헌조치 > 6월 항쟁 > 6.29(속이구) 선언(김대중 사면 복권) > 양김 분열 > 다시 노태우

• 6월 항쟁 후 개정된 87년 헌법의 성과와 한계 •

- 두 사람의 죽음 등으로 재조명된 조항은? : 제12조 제2항 고문 금지, 제5항 체포 구속 즉시 통지 의무 등 인권 보장 조항/언론 검열제 금지, 옥외집회 시위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 노동자 대투쟁과 관련된 조항은? : 제32조 제1항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제 시행/제33조 제3항 단체행동권 대폭 확대/제119조제2항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
- 정치 야합으로 미진했던 조항은? : 전문에 저항권 행사의 상징인 5,18 광주민중항쟁을 넣지 못하고, 임시정부 법통, 4,19 민주이념 명시, 총강에 군(軍)중립조항 신설로 타협
 - 선거제도 등 참정권 개혁 실패 : 승자독식 양당제에 유리한 소선구제 중심 유지
 -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통제장치 미흡 : 제왕적 대통령제
 - 제왕적 대법원장제
 - 사회국가 원리의 광범위한 구현에 크게 미진
 - 정당의 국가후견제(엄격한 정당규제+국고보조) 개정 못함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도입 실패, * 선거연령 인하 등 후속법개정 실패

(2) 서울시 의회(구 태평로 국회의사당) - 헌법유린의 현장, 현대판 왕정을 꿈 꾸 독재자들의 말로

- 일제말 의열무장투쟁의 역사적 현장
- 이승만 개헌파동과 4.19 혁명의 현장 : 4사5입 개헌(이승만식 영구집권)
- 박정희 정치만행 현장 : 중앙정보부 창설, 국가보안법, 한일협정, 월남파병, 3선개헌과 유신쿠데타(박정희식 영구집권)



[서울시 의회 건물 역사]

- 1934년 부민관으로 신축 : 총독부 산하 국립극장 격
경성전기회사에서 100만원 기부, 1934년 준공/ 동경 히비야 공회당 모방/ 단성사 서울의대
부속병원 화신백화점과 함께 모더니즘 양식 건물
- 1950 6.25동란 -1975 : 국회의사당(여의도 이전은 정치1번지를 유배형에 처한 꼴/ 서울대
를 관악산으로 처박은 것과 유사)
- 1976-1991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활용
- 1991 이후 서울시 의회

** 역대 국회의사당 : 중앙청 중앙홀(48.5-50.11) ⇨ 태평로 의사당(50.12- 52.1) ⇨
대구 문화극장(50.7) ⇨ 경남도청 내 무덕진(-53년) ⇨
태평로 의사당(54-75.4) ⇨ 여의도 의사당(75년부터)

1. 일제말 의열무장투쟁의 역사적 현장

- 45.6월 아시아민족 분격대회 : 정치깡패 박춘금
 - 총독, 사령관, 난징, 만주괴뢰국 대표 등 참석
 -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 ‘부민관 폭탄 의거’
- 조문기 선생 (2008. 2. 5. 작고, 당시 만 18세)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기여

2.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파동의 역사적 현장

가. 장기집권과 헌법

- 내각제에서는 장기집권이 얼마든지 가능 : 전두환의 내각제 개헌 음모(수상정부제)
- 대통령제에서도 연임금지조항이 없으면 가능
- 대통령제의 효시인 미국헌법 : 워싱턴 대통령은 제한 없고 종신직도 가능함에도 재선으로 그 침/루즈벨트 대통령은 전란을 이유로 4선/1951년 수정 제22조에서 3선 금지조항 추가
- ※ 우리나라는 초대부터 권력욕의 화신인 이승만에 의해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양령대군파 전주 이씨인 이승만은 처음부터 왕조 획책 : 영친왕 귀국 불허 및 구 왕가 재산 몰수/이기봉의 자 이강석을 양자로 들이고 장교로 만든 것 등)
- ※ 박정희의 쿠데타로 얻은 권력을 끝까지 지키려다 결국 총탄으로 종언
- ※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액트)/절대 권력은 절대 집착, 절대 폭망

나. 이승만의 1954년 4사5입 개헌 : 곡학아세의 표본

**6.25 동란 중 1차 발췌 개헌,
이승만 장기집권의 서막**



**1954년 11월 29일, 2차 사사오입 개헌이
통과된 직후의 국회 모습.**



- 제헌헌법은 대통령 국회 간선제
- 발췌개헌(1차개헌) : 이승만의 국회 무시/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한민당 등 압승으로 재선 가능성 전무/ 1950년 동란 중 부산 계엄 아래 의원 감금, 기립표결로 발췌개헌 (직선제, 양원제 : 해야할 때까지 참의원 구성하지 않음)
- 환도 후 1954년 태평로 의사당에서 4사5입 개헌 시도 : 1954년 5월 총선에서 자유당은 총 203석 중 114석 획득 6월 교섭단체 등록시 136석 확보/9.7. 개헌안 제출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 1954.11.27. 국회 표결 : 재적 203명 중 202명 출석,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부결선언
- ※ 기권표 중에는 무효표/투표용지의 한자어 可와 否를 모르는 의원에게 미리 口모양이 있는 쪽에 찍으라고 하자(그도 아마 否를 丌로 잘못 알았던 모양) 양쪽 모두에 찍었다거나 가운데에 찍어 한 표가 모자랐다는 후문
- 11.29. 개헌정족수는 135석이라면서 가결로 번복
- ※ 당시 자유당 원내총무 이재학의 발언 : 재적의원 203명중 정확한 수치는 135.333인데 자연인을 정수 아닌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4사5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해 가장 근사치의 정수인 135명이 의심할 바 없다. ... 이 결론은 수학적 권위로 유명한 최윤식(崔允植) 의원철(李源喆) 박사도 같은 의견이다 : 최윤식은 서울대 교수로서 초대 대한수학회장/의원철은 초대 중앙관상대장 연대 교수 학술원 종신회원과 동일인?
- ※ 대한민국 헌법 기초자인 고대 총장 유진오 : 법이론상 0.0001이 부족해도 부족은 부족이므로 부결된 것이다
- 1956년牛意馬意 : 이승만의 대통령 불출마 선언에 우마차 800대 동원한 시위

• 4사5입 개헌의 특징 •

1. 3선 금지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해제/ 국무총리제 폐지
2. 장기집권을 허용받는 조건으로 사회적 경제 조향을 자유시장경제 조향으로 대거 바꿈
 예) 제헌헌법 제6장 경제 제87조 제1항 삭제 :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3. 국민투표제 신설 : 영토변경 주권제약 등에 한정/50만명 서명-국민 헌법발안도 인정, 하지만 2/3 투표 및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

- 기타 :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한 국가보안법 제정 및 개정
 - 영구집권을 위한 정치 언론탄압의 도구
 - 1948년 제정/1959년 전부개정(입법파동)
- ※ 반공법 : 1961년 제정(국가재건최고회의)/1980년 국가보안법과 통합

다. 5.16 군사쿠데타와 박정희의 영구집권 획책 개헌



- 1961년 5.16일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로 정권 찬탈
 - 쿠데타 직후 : 계엄통치/6.6 국가최고재건회의 설치, 3권 장악/ 중앙정보부법 (6.10) 반공법(7.3) 제정
- ※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헌법 기능 정지/초헌법적 기관으로써 행정뿐만 아니라 해산된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권을 장악하고 혁명재판을 통해 사실상 사법권까지 장악 (국회도서관을 재건회의 도서관으로 징발)
- 수상한 지하도와 제3 별관 : 국가최고재건회의의 장소/ 중앙정보부 창설 준비(화폐개혁, 4대 의혹사건으로 공화당 창당자금 준비)

• 5.16 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의 특징 •

1. 내각제를 폐지하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신설 : 국무회의의 의결 권한을 폐지 하고, 국무회의를 단순 심의기관으로 축소
2. 소선거구제로 양당제 추구 : 낮은 민도와 관권 개입으로 여당의 압도적 우 세 보장 >국회에 의한 대통령 및 정부견제 사실상 불가능
3. 사회국가 조항 삭제, 자유시장경제 조항 신설
 - 1) 제헌헌법 제5조 삭제 :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 2) 제헌헌법 제84조 제1항 후단 삭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 3) 자유경제조항 신설
제 111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4. 기본권 조항 체계화



MEMO

● 69년 3선개헌으로 장기집권 획책

69년 6차 삼선개헌 박정희 영구집권의 서막



- 1962.12.26.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
- 1967.6.8. 제7대 국회의원선거 : 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 총 175명
 - 민주공화당 129명(102+27 : 73.7%), 신민당 45명(28+17), 대중당 1명
- ※ 공화당 개헌선 확보 : 175석의 2/3은 116.666명
- 1968.1 : 1.21. 북한 무장공비 남파/1.23. 푸에블로호 납치
- 김종필계 견제 탄압 :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비서실장으로 견제/1968.5.24.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김종필 당의장 정계은퇴
- 1969.1.6. 민주공화당 길재호 헌법의 미비점 개헌 검토 시사
- 4.8. 권오병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 김종필 계열 공화당원들의 반란/반당자 5명(양순직 예춘호 박종태 정태성 김달수 등 구주류) 제명, 김종필의 개헌지지로 봉합
- 7.25. 박정희 담화발표 : 개헌을 자신에 대한 신임과 결부시킴
- 8.7. 개헌안 제출 : 공화당 108명(정구영 제외), 정우회 11명, 신민당 3명(성낙현 조흥만 연주흠)
- 대한반공연맹 재향군인회, 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한기독교연합회, 제헌국회의원 일동, 4월혁명동지회 등 50여개 사회단체 개헌지지 성명
 - 신민당과 서울 고려 연세 경기대 경북대 등 20여개 대학 개헌반대 시위

- 신민당 배신자 제거를 위한 자폭 : 소속의원 중 44명 제명 및 신당발기서명, 임시전당대회에서 해산결의, 제명조치된 44명으로 새로운 교섭단체 등록(헌법 제38조 : 당적 상실 소속정당 해산시 의원직 상실 규정/합당 제명의 경우는 제외)
- 9.9. 본회의 상정/9.14. 새벽 2시30분 국회 제3별관 특별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야당의원 불참 가운데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 통과
 - 가표 122명 : 공화당 107명, 정우회 11명, 무소속 3명, 대중당 1명
- 10.17. 국민투표 : 총유권자 1,504만 8,925명의 77.1%인 1,160만 4,038명이 투표 찬성 755만 3,655표(65.1%), 반대 363만 6,369표(31.4%), 무효 41만 4,014표(3.5%)로 통과

• 69년 삼선개헌 헌법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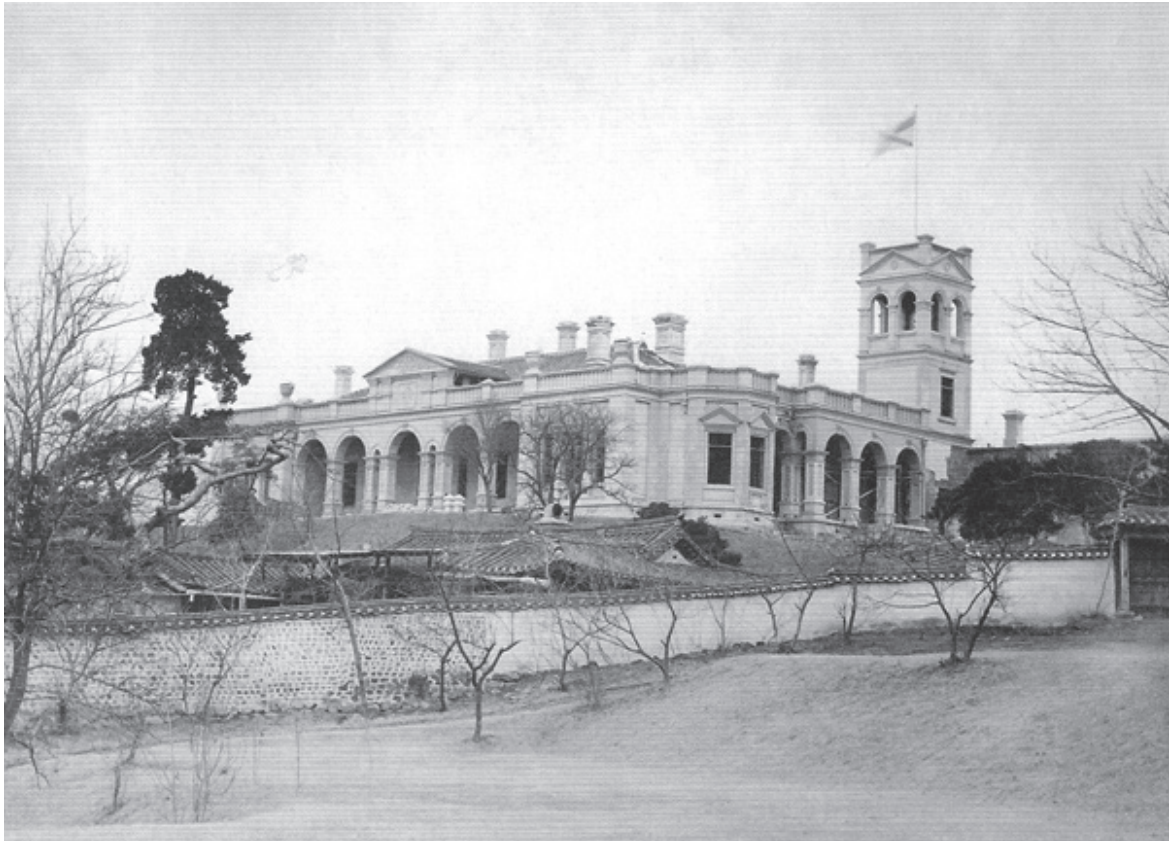
1. 3선 연임, 4선 금지 : 유신헌법을 염두에 둔 눈속임
2. 대통령 탄핵정족수 강화
(30~50인 발의, 2/3찬성으로 바꿈 : 현행 과반수 발의, 2/3찬성)
3.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신설

●기타 :

- 1) 1963년 중앙정보부법 개정 : 조직, 소재지, 정원, 예산 비공개(타부처 예산에 끼어 넣기)
 - 2) 65년 한일협정 비준 강행 : 개별 대일배상청구권 완전, 최종 해결 합의된 것으로 확인(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민간기업 징용자/문화재 불법반출 등 추궁근거 박탈 시도)/3억 무상, 2억 차관 (52년 22억 달러 요구, 장면 6억, 필리핀 5.5억 무상, 2.5억 차관)/경제 개발, 정치자금에 필요했던 박정희와 한미일냉전블럭이 필요했던 미국의 이해 일치/한일협정으로 정치자금을 65년부터 5년간 6600만 달러 이상(공화당 예산의 2/3) 일본기업으로부터 받음/대일 쌀 수출과 정에서 김종필이 제일 한국기업에게서 뇌물상납 받은 의혹
 - 독도 일본땅 주장 근거 제공 : 독도 인근을 공공어로구역으로 인정
 - 3) 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초헌법적 조치/유신의 전주곡/왕정 회귀/선 국가비상사태 선언(안보논의 금지, 기본권 유보), 후 특별조치법 입법 · 유신헌법
- ※ 특별조치법 내용 : 국가동원령 발동(인적, 물적, 토지, 시설 동원수용)/주민 이동, 입주, 소개, 옥외집회 · 시위 · 언론 및 출판과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규제/대통령의 세출예산 조정권/이러한 대통령 조치에 위반한 자 처벌

(3) 덕수궁과 고종의 길

1. <고종의 길> – 아관파천 : 좌절된 입헌군주제의 꿈



동남측 경계의 돌담길에서 본 구러시아 공사관 전경
(프랑스 프랑델공사 후손 칼메트 소장 사진, 『다시 만나는 이웃』, 2010에서 전재)

- 1885년 민비시해 후 1896. 2. 11.부터 1897. 2. 20.까지 1년간 조선 고종과 세자가 경복궁을 떠나, 어가를 러시아 제국 공사관으로 옮겨서 거처한 사건
- 엄 상궁, 친러파인 이완용 득세/ 독립협회 항의로 덕수궁 환궁/ 1897년 10월 대한제국 선포/ 광무개혁(최초 의회인 중추원 관제 발표, 그러나 전제군주제를 주장했던 수구파가 익명서 사건(독립협회가 공화제를 추진) 조작/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해산/ 입헌군주제 운동은 이후 헌정연구회등을 통해 계속됨/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지식인 사회에 널리 퍼짐/ 고종 승하 후 민주공화국 운동으로 변화

2. <중명전> – 을사늑약의 현장– 헤이그 밀사 파견 현장



-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덕수궁을 정궁으로 삼으면서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으로 하여금 정관헌, 구성헌, 돈덕전, 중명전 등 여러 동의 서양식 건축물 건축 지시
- 중명전은 1897년 황실도서관으로 지어진 건물(원래 이름은 수옥헌), 1904년 덕수궁 화재때 고종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중명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칭
- 덕수궁 화재 이후 편전으로 사용되어 외교사신의 접견이 이루어졌던 장소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
- 일제강점기에 중명전은 덕수궁 일원에서 제외되어 서울구락부라는 사교단체 등에 임대, 최근 까지도 민간에서 사용
- 최근에 덕수궁 일원으로 복원, 원형복원공사 진행/지금은 1층에 을사늑약과 헤이그밀사 파견에 대한 각종 자료 전시
- 대한제국 검사 이준 열사 - 입헌군주제 수립 목적의 헌정연구회 부회장, 한때 일진회와 정면대립,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합법적 활동이 막히자 1906년 대한자강회를 만들어 사회문화단체로 활동/ 법관양성소(서울법대 전신) 1회 졸업 검사 임관
-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 상설 이 위종과 함께 밀사로 파견/ 당초 러시아 니콜라스2세의 비밀초청장으로 추진/ 일본측 눈치를 보는 러시아측

의장과 주최국 네덜란드의 비협조로 참석 거부/ 이 준 분사/ 을사늑약의 무효를 국제사회에 알린 최초의 사건/ 후유증으로 고종 강제 퇴위 정미7조약 체결로 망국 가속화

3.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 역사관 _ 분단의 시발점 _ 미소공동위



- 덕수궁 역사 - 아관 파천 후 대한제국 정궁으로 선포
- 석조전 --남북한 단일정부 수립 좌절의 현장, 미소공동위원회 회의장. 지금은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퀴즈)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처음 신탁통치안을 낸 국가는?

(답)미국은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장 50년 신탁통치 제안

- 소련은 민주주의적 임시정부 수립 제안

※ 동아일보 오보사건 :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소련만이 신탁통치 주장

- 나중에 미국은 민족진영 반발로 당초 주장 철회/ 소련은 신탁통치에 찬성, 좌익진영에 찬탁 운동 지시

- 미소공동위원회(46.3.20./덕수궁 석조전) : 3상회의 결정에 따른 미소점령군의 공동위원회/ 한국 측 협상대상자인 정당 사회단체의 선정을 놓고 결렬(소련이 제시한 원칙 : 3상회의 결정 지지단체에 국한/진실한 민주주의적 단체/장차 한국을 소련침략 요새지로 만들려는 반소련단체가 아닐 것)

- 신탁통치 수용에 대한 찬반론으로 극한 투쟁
- 2차 공동위원회(1947.5.21.) : 좌익과 중간파는 참여/한민당 등 우익진영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참여하고 신탁통치는 별도로 반대/반탁운동을 주도하던 한독당도 일부 이탈 ⇨ 이 승만과 김 구 직계를 제외한 세력이 참가하는 결과(남한 425개 단체, 북한 36개 단체, 회원수 총수 7천만명) ⇨ 8월경 협의대상 문제로 또 결렬(소련 3상회의 결정 고수/미국 의사표시 자유)/미군정의 공산당 검거와 소련의 항의 및 미국의 내정간섭 주장
-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 총회 상정 : 남북한 단일정부 수립론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론 대결의 시작

(4) 4.19혁명 기념 도서관 - 혁명으로 다시 세운 민주공화국



- 유래 : 서대문 경무대로 통칭되던 이기붕 사저를 61년 4월혁명 유족회가 점거/1963년 이기붕 소유로부터 국유로 환수/1964년 4.19 혁명유가족에게 넘겨 4.19기념 사설도서관 개관/1966년 공공도서관으로 등록/1982년 국가보훈처에서 도서관 대지 및 건물 증여받음/1993년 김영삼 정부의 4.19 민주묘역 성역화 사업과 함께 재건축 추진/1998년 건물신축/2000년 4.19혁명기념도서관으로 개관

※ 수유리 4.19 탑 : 친일부역자 김경승에게 의뢰

61년에 남산에 4월 공원을 세우고, 시청 광장에 4월 민주혁명 순국학생 위령탑을 세우기로 했으나, 63년 9월에 박정희가 수유리 골짜기로 이전하게 하고 2009년 친일인명사전에 친일 부역자로 기재된 김경승에게 수유리 4.19 탑을 만들게 함

1. 이기붕 - 권불십년, 패가망신의 전형

- 효령대군 17대손, 아들 이강석을 이승만(양녕대군파)의 양아들로 삼게 함
- 자유당 창당, 박마리아의 공작으로 이승만 비서실장, 국회의장, 56,년, 60년 부통령 후보로 출마
- 이승만의 대를 이어 민주공화국을 이씨 왕조화하려고(민족의 해와 달), 3.15 부정선거 획책
- 4.19 혁명으로 경무대 별관에서 아들 이강석의 총에 죽음/박마리아, 동생, 이강욱도 죽음(멸문지화)
- 이정재 등 정치 깡패를 정치에 이용하다 58년에는 선거구마저 가로챈 파렴치한
- 1957년 일반 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 개악/출마자의 기탁금제 신설(40만원), 선거비용 제한, 선거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의석(선거구)도 203개에서 233개로 늘림

2. 4.19 혁명 후 개헌 과정 - 정치권이 혁명 성과를 말아먹다

- 내각제 : 민주당 구파와 자유당의 결탁의 산물, 실패는 선 정부통령선거 후 개헌 주장
 - 선 개헌 후 정부통령 선거로 독재의 하수인인 자유당도 국회의원 선거, 개헌 과정에 참여
 - 이승만 정권에 참여했던 허정이 과도정부 수반, 개헌 후 선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역임
 - 결과적으로 혁명에 걸맞는 개헌을 하지 못함



MEMO

• 60년 헌법의 성과와 한계 •

(성과)

- 1) 기본권 강화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제28조2항)
-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호선제, 헌재 신설,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으로
- 3)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 당시 군 단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었고 읍면자치제 실시/ 따라서 읍면장까지 직선하도록 함

(한계)

- 1)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 분산 모호 (군통수권과 임명권 분리)
예)국군통수권의 실질적 행사자가 누구인가 명확하지 않았음 : 5.16 쿠데타가 터지자 윤보선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함(장면에 대한 반발로 쿠데타 저지에 실패)

※ 헌법 제61조제1항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 통수

제72조 : 선전(宣戰), 강화(講和), 계엄안(戒嚴案), 계엄해제, 군사(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및 각급 참모총장의 임면(任免)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사항

5.16 쿠데타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와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요청한 쿠데타 저지 목적의 병력동원 허가를 윤보선 대통령(구파)는 '군통수권이 없다'며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군사반란을 방조, 헌정질서 중단 초래

- 2) 사회적 경제 조항 복원 실패 - 못 살겠다 같아보자 (56년 대선 민주당 신익희 후보)

※ 1954년 이승만 4사5입 개헌 때, 삭제된 사회적 경제 조항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3. 60년 11. 29일 특별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 - 유일한 국민개헌 사례



- 민주당 정부는 4·19 혁명에 따른 다양한 개혁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 총리였던 장면(민주당 신파)와 형식적인 대통령이었던 윤보선(민주당 구파) 간 파벌 갈등까지 벌여 정치적 기반 약화/정책 추진 난관, 이승만 자유당 정권 청산 문제에도 우유부단
- 특히,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4·19 혁명 당시 일련의 시위에서 군중들을 살상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점점 강해져 1960. 10. 11.에는 4.19부상자 50여명 등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 호소/결국 10월 17일, 민의원에 특별처벌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 부칙 개헌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에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 성사/ 이를 근거로 12월 31일에는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제정



MEMO

(5) 경교장과 김구 주석 - 무장항쟁과 건국강령 평등, 평화, 통일의 아이콘



○ 경교장 역사 - 해방 후 임시정부 청사, 김구 주석 암살 현장

- 일제 강점기 금광업자 최창학의 별장(죽침장)
- 해방후 김구 주석의 거처로 제공, 일본식 가옥 이름이 싫어 인근 다리 '경구교'를 따서 경교장으로 개명
- 1949.11.4.~1949.6.26. 집무실 왼쪽 창가 의자에서 안두희에게 암살되기 전까지 김구 주석의 사저이면서 공관/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한국독립당 본부
- 그 후 최창학에게 반환되었고, 중화민국 대사관저로 활용/ 6.25동란 때 미국특수부대 주둔
- 1967년 삼성재단에서 매입/ 삼성병원 현관으로 사용
- 2005년 사적 465호 지정
- 2009 경교장 전체 복원 결정/건물 내에 있던 병원시설 철거 / 2013.3.1. 개관

※ 해방 직후 3대 정치 중심지 : 경교장(김구)/이화장(이승만)/삼청장(김규식)

○ 백범 암살 : 이승만과 미국방첩대의 합작품

- 1995년 국회진상보고서 : 안두희 증언으로 이승만 정권 차원에서 기획살해
- 안두희 : 우파 테러단체, 백의사의 제1소조 요원인 동시에 한국 주재 미군방첩대(CIC) 요원

• 건국강령 •

○ 김구 주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이념은 1941. 11. 28. 해방을 대비하여 만든 건국강령에 자세히 규정(중요 부분 요약)

(4)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삼균주의에 의거) 좌열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영정시행함

(가)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권(권) 피선거권 파면권 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다) 신체자유와 거주 언론 저작 출판 신앙 집회 결사 유행 시위운동 통신비밀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교육 거주연수 사회출신 재산상 황과 과거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며 매개인의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지키며 세금을 바치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보위하며 사회를 시설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5)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관은 좌열한 원칙에 의거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1기에 중앙에서 총선거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거하여 조직한 국무 의회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행정기관임. 행정분담은 내 외 군 법 재 교통 실 업 교육 각부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정부 부군도에 부군도청부를 두고 도에 도의회 부군도에 부군도의회를 둠

(6)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제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보위함에 연환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열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행함

- (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농림 수리 소택과 수상 육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기업과 성시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으로 함
- (나)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 공 사유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저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의 방산과 기지와 기타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절 사유자본과 부적자의 일절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과 일절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 혹 공영의 집단생산 기관에 충공함을 원칙으로 함
- (라) 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 국영공장 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 (마) 국제무역 전기 자내수와 대규모의 인쇄 출판 전영 극장등을 국유국영으로 함
- (바) 노공 유공 여공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를 보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보장을 힘써 행함
-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7) 건국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좌열한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추행함

- (가) 교육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칙을 삼아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배합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기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여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둬
-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기본교육에 관한 일체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률로 면비보습 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식을 자비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함
- (라) 지방의 인구 교통 문화 경제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기관을 설치하되 최저한도 매 1읍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1도에 2개 전문학교 매 1도에 1개 대학을 설치함
-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훈련으로 하는 이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 (사) 공사립학교는 일률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한교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로써 교육정책을 추행함

김구선생의 유지를 생각하는 시간

- 통일은 구호에 그치고 각자의 욕심만 취한 결과 분단과 민족상잔의 비극 도래
 -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사의 비극에 대하여 북측이나 미 소 등 외세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 외세와 국제정세에 편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재의 안일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가 과연 국제무대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 독일은 패전으로 분단되었지만 서독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준비,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는 과단성으로 통일 이룩/EU의 실질적 주도자로서 최고의 번영을 누림
 - 전쟁의 위협과 외세의 부당한 간섭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김구 선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 평화와 번영만을 바라면서 불확실한 통일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기피를 나타내는 우리가 들었던 촛불은 완전할 수 있는 것인지
- 지금까지 논의된 개헌과정에서 통일문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어왔음
 - 이승만과 박정희는 분단상태를 장기집권과 독재의 핑계거리로 활용 : 총강의 영토조항까지도 정권유지수단으로 활용(국가보안법의 제정근거 : 북한정권은 물론 주민들까지도 반국가단체에 속한 우리 국민으로 규정/그들이 우리 헌법 제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귀책사유인지/대한제국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만으로 그들에게 우리 법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거는 정교하고 충분한 것인지 ⇨ 과거에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대역무도한 범죄일 수 밖에 없었음)
 - 특히 박정희는 7.4공동성명까지 유신독재라는 헌정사 최고의 최악의 도구로 악용

• 통일 문제를 악용한 유신헌법 조항들 •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전문)

* 통일주체국민회의(제3장)

제35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제37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38조 ①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제39조 ①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헌법역사기행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100년사 자료집 _ 31

제40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②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41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한다.

* 제43조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제46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

* 긴급조치 :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 연기 핑계도 통일 : 부칙 제10조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 현행헌법 : 독소조항만 제거/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3조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음

* 이번 개헌과정에서도 통일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없었음 : 촛불정신을 표방하는 정부 개헌안도 마찬가지



MEMO

(6) 중앙청과 광화문

1. 중앙청 -제헌의회의 산실/정부수립 선포의 역사적 현장



○ 중앙청 : 일제 총독부가 10년 공사로 지은 건물로 독일인 건축가 게오르크 데 라란데가 기초 설계하고 1916.7.10. 착공, 1926. 10.1 완공/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근대식 석조 건물(일본 본토까지 포함하여 최대 건축물)/르네상스양식에 바로크양식을 가미한 네 오르네상스양식/日자형 건물로 서울시청과 함께 일본을 상징/화강석 대리석 공예품과 조각 등 설치/조선은행과 철도호텔에 이어 세 번째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청사 중앙홀에는 금강산 선녀전설과 일본 하고로모전설 벽화 설치(내선일체 강조)/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건물/일본은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 국채까지 발행 (최초 5년 계획/10년으로 연장 675만엔의 예산 소요)/
이때 조선왕조의 법궁인 경복궁을 훼손하고자 1915년 경복궁 흥례문 구역 철거 조선물산공진회 전시장으로 사용/ 광화문 : 헐어버리려다 여론의 반대로 동쪽문인 건춘문의 북쪽으로 옮김

- 1907.2. 일본 통감부는 남산의 왜성대에 위치/합방 후에 총독부 건물로 사용
- 1926.1. 경복궁에 위치한 신청사로 이전
- 해방 후 미군청정 (Capital Hall)

(퀴즈) 중앙청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했고 누가 지었나?

(답) 1945.9.9. 항복문서 조인식 후 미군사령부로 사용하며 ‘캐피탈 홀’로 이름 붙인 것을 정인보 선생이 중앙청으로 번역한 것

- 1948.5.10. 중앙홀에서 제헌의회 개회
- 1948.8.15. 청사 발코니에서 정부수립 기념식 거행
- 1962.11.22. 청사 복구 중앙청 본청으로 사용/국무총리 이하 중요부처 입주
- 1968년 서양식 정문 철거/광화문 복원
- 1986.8.21. 입주 관청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
- 철거주장은 이승만 때부터 나왔고 노태우 때도 지시/1991.1.21.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청사 철거 발표가 있었으나 미이행/1993.8.9. 김영삼 대통령의 청사 해체 경복궁 복원 국립박물관 신축에 관한 일괄 지시로 완전철거로 결론/1996.11.13. 지상부분 철거완료/1998.8.8. 독립기념관에 잔해 일부 공개전시

• 제헌헌법의 성과와 한계 •

1. 반쪽짜리 헌법 : 남한 단정 수립 반대했던 좌파, 중도파, 임정요인들 참가 거부
2. 의장 선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승만은 김구와 김규식이 과거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부 수립에 포섭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이에 대해 김구는 "당분간 이승만과의 합작은 불가능하다"고 응수
3. 제헌헌법은 우파 중심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건국강령이 반영된 44년 5차개정헌법)을 기초로 했으므로,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충실하는 등 제헌헌법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국가를 지향했음

(성과)

삼균주의의 정치·경제·교육의 완전한 평등을 기한다는 그 취지가 헌법 전문 중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한다는 문구로 되살아남

제5조 각인의 자유와 평등, 창의를 보장하되, 국가가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짐

제15조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제18조 노동자 이익균점권을 보장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국민기본 생활 충족, 사회정의, 균형있는 경제발전 추구를 기본으로 하며,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됨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함

(한계)

1. 주거, 통신,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등 자유권 대부분을 법률유보로 규정
2. 사상의 자유를 뺐 : 유진오 박사의 작품/그가 보수주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초기에는 마르크스주의 연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했고, 친일 사회주의 좌파 문학인으로 활동했으나, 태평양 전쟁 이후 친일 칼럼, 논설, 친일 어용단체에서 활동

2. 전두환의 5.17 내란과 80년 헌법

(제정 경위)

- 10.26 이후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제처에 헌법개정 검토 지시
- 국회와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 : 모두 잘못일 수 있음(최종 의결은 국회의 몫이지만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정신에 따라 정부와 법원 등을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의 몫)

※ 정부 주도의 논거 : 국회에서 발의한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되므로 새 헌법을 모

독하는 처사(대통령 발의는 국민투표로 확정)/국회는 자신들이 성안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그대로 발의하라고 요구/최규하 등 정부측은 정부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므로 국회 심의 시부터 참여하게 하든지 수정발의를 허용하라고 주장/이를 위해 정부도 개헌심의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언

- 국회는 정파간 다툼 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정부가 연구의 깊이를 내세워 강력히 대시 : 최초의 헌법연구반 보고서 등 다수의 개헌관련 자료 생산
- 최규하 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에 관심
- 신군부 등장으로 정부형태보다 대통령 간선제로 관심 이동
- 신군부의 주문대로 대통령제 간선제 헌법 성안
- 1980.4. 보안사령관 전 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 취임
- 1980.5.17. 비상계엄 전국확대/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김대중 체포
- 5.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위원장 최규하대통령,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 두환)
- 국보위 소행 : 공직자 숙정, 중화학공업 투자재조정, 졸업정원제 과외금지, 삼청교육 실시, 유신세력까지를 포함한 구 정치인들 강제 은퇴, 정간물 등록취소
- 8.13. 김영삼 총재 정계은퇴, 8.16 최규하 사임
- 8.27. 전두환 통대에서 대통령 선출
- 1980.10.23. 신정부 성안 개헌안 국민투표 확정
- 10.27. 제5공화국헌법 발효, 국회, 정당, 통대 해산
- 개헌 주요내용 : 기본권 조항 일부 정비/개악, 통대 폐지 대신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간선(여전히 체육관 선거)/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국회 국정조사권 신설, 대통령의 대 국회 우월적 지위
- 10.27. 국보위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 : 1981.4.10.까지 국회를 대신하여 163건의 법률 개악/정당관계법 및 정치활동규제관련법, 언론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국회법 까지

• 5.17내란 후 개정된 80년 헌법의 특징과 문제점 •

1. 체육관 선거
2. 유신헌법 잔재 :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 회기 제한
3. 유명무실 헌법재판기관 : 회의 한 번 없이 잠만 잔 헌법위원회
4. 국민환심용 기본권 조항 추가 규정 :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생교육 등

※ 박정희의 충실한 모방자 전두환

- 역사는 되풀이된다 : 수구 세력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함
- 그 이면에는 국민들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망상이 깔려 있음
- 지식인들의 변절과 협조도 한몫
- 기득권 세력의 반격은 일시적으로 다수 시민세력을 좌절시킬 수 있음을 증명

(7) 광화문광장(민의를 광장)

— 아! 촛불혁명!! 그 날의 함성과 감격!!!



○ 광화문- 한국 근현대사의 생생한 현장

- 조선시대: 6조 거리
- 일본제국주의 시대: 조선총독부, 경기도청, 경기도경찰청 등 찬탈의 거리
- 해방 후 ; 미군군정청 등 남북분단의 현장 - 60년대 : 4.19 혁명의 격전지, 5.16 군사쿠데타의 헌정 파괴 현장(국가최고재건회의)
- 80년대 : 87년 민주항쟁의 거리 - 2017년 : 촛불 혁명의 성지

○ 촛불의 등장배경과 향후 추이

-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국민의 정치의식 성장
- 댓글 여론 조작 등 신종 부정선거
- 국가의 품격 상실 사태 초래 : 비선실세
- 정치권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권리 행사
- 평화적 방법에 의한 정치적 의사의 극명한 표현
-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적인 압박
- 의연함과 당당함 속에서 얻은 승리

- 반복되는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는 촛불의 힘
- 촛불을 사칭하는 세력 경계
- 반촛불세력의 존재

○ 촛불이 원하는 정부

[민주적 정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부 -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 국민이 언제든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정치체제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주는 정부] -양극화 해소/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지속가능사회를 사회국가 복원으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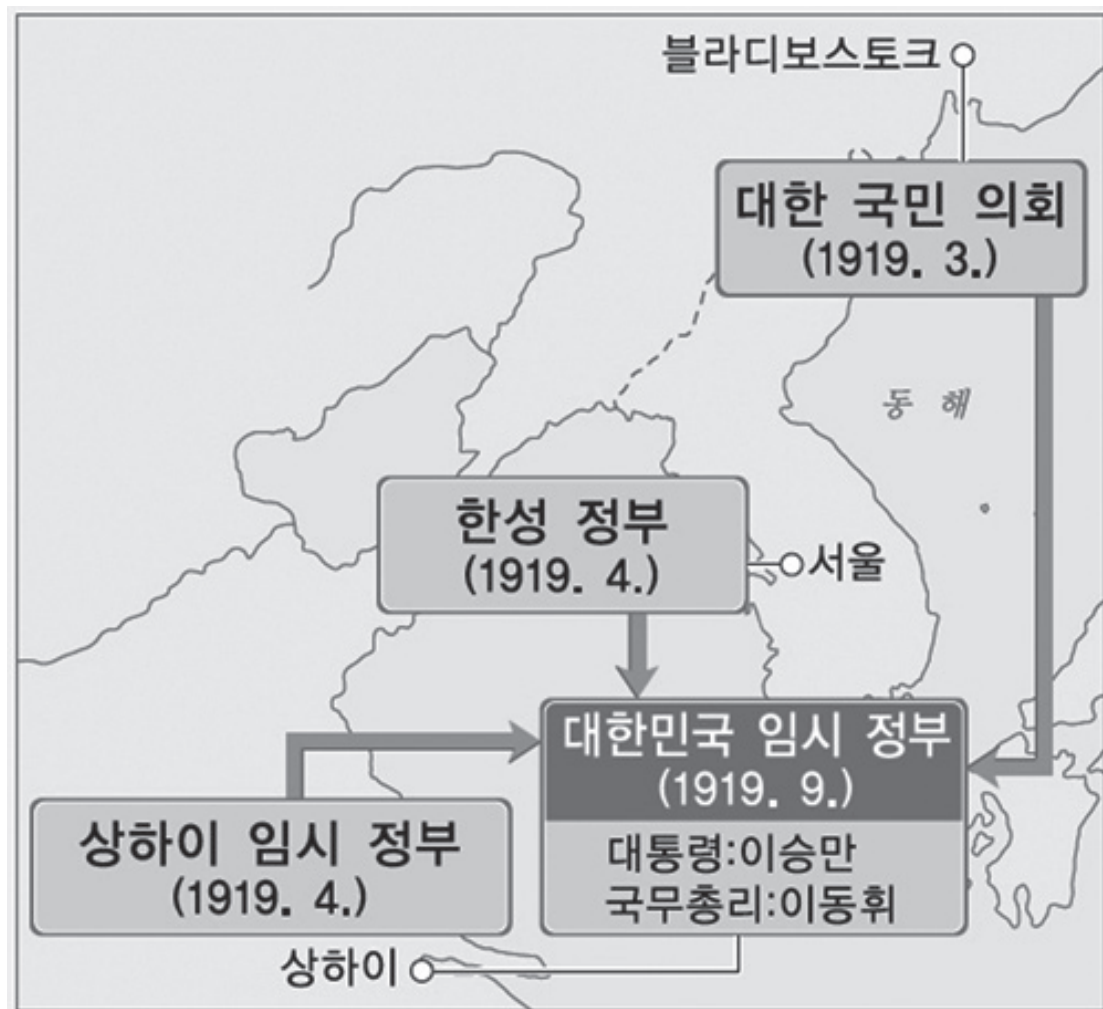
[능력 있는 정부] - 냉엄한 국제적 상황 : 미일의 밀착과 중국과의 대결 국면, 평화통일의 시대적 사명 완수를 목표로 실용주의 추구

● 새 헌법에 들어갈 사항 ●

- 기본권 신장 : 소외계층은 물론 소수자 배려
- 기본의무 확보 : 탈세자 병역미필자 공직 취임 봉쇄
- 국민주권의 실현 : 직접민주제 요소의 최대 반영
- 사회적 경제 강화 : 경제정의 경제민주화 실현
- 교육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 중요 제도의 리모델링
- 87년 체제의 핵심 요소 승계 : 국민이 직접 창출하는 정부
-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에 권력집중 방지
- 권력의 합리적 행사 보장
- 통일 대비
- 지역의 권리 확대
- 지속가능한 성장 확보 :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 국민이 만든 새 개헌안 전 조항을 보고 싶으면 moveon.kr로 들어오십시오.

(8) 경복궁역 2번 출구 – 한성임시정부 유적지



- 1919.4.23. 종로구 서린동 봉춘관에서 국민대회 개최 : 임시정부 선포문과 국민대회 취지서
각원명단 친 6개조 약법과 임시정부령 제1호 및 제2호 발령
- 의의
 - 13개 시도대표 25인
 - 해외가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수립
 - 1919.9. 대표적인 3개 임시정부 통합(연해주 대한국민의회,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성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 : 한성임시정부가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세워진 정부/국민대회개최라는 절차적 정당성과 탄탄하게 구성된 조직
 - 다만 새 임시정부의 본거지는 활동이 편한 중국 상해에 두고,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도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일인 4월 13일로 합의

• 선포문 •

……아 민족은 세계만방에 대하여 조선의 독립이오 조선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고 아울러 전 민족의사에 기하여 임시정부의 성립되었음을 자에 포고 하노라…….

• 국민대회 취지서 •

3•1독립선언의 권위를 존중하고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여 인간 필연의 요구에 보답하게 하기 위해 이에 민족일치의 동작으로써 대소의 단결과 각 지방 대표자들로서 분회를 조직해 이를 세계에 선포한다

• 결의사항 •

① 임시정부 조직 ② 일본의 조선통치권 철폐와 군대의 철퇴 요구 ③ 파리강화회의의 대표 선정 ④ 일본관청의 관공리 퇴직 ⑤ 납세 거절 ⑥ 일본관청에 청원 소송 금지

• 약법(約法) •

제1조 국체(國體)는 민주제를 채용함, 제2조 정체(政體)는 대의제(代議制)를 채용함

제3조 국시(國是)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의 행복을 증진하게 함

제4조 임시정부는 일체 내정, 일체 외교의 권한을 가짐

제5조 조선국민은 납세·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6조 본 약법은 정식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발표할 때까지 적용함

임시정부령 1호는 납세를 거절하라, 2호는 적의 재판과 행정상 모든 명령을 거절하라

(9) 그 밖의 헌법 관련 유적지

1. 서대문형무소



■ 독립투사와 정치범의 한이 어린 역사공간

- 역사적 경과 - 1907년 율회 원년 설치 - 처음부터 의병탄압 및 수감을 위해 사용
 - 일제하 식민통치 저항사범 수감에 사용 : 105인 사건/김좌진/3.1운동 후 손병희 유관순 등 3천명 수감
 -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세력 잠시 수감/1950년대에는 좌익계가 70%(김원봉 김성숙 여운형) 시국사범 수감
 - 1961년 서울교도소로 개칭/1967년 서울구치소로 개칭 : 김두한 1946부터 67까지 7차 수감 /조봉암 선생 및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수감 후 사형집행/문세광 사형/인혁당 사건으로 법 정살인을 당한 도예종 등 8인 사형/김재규 사형
 - 1987년 의왕교도소로 옮기고 독립공원의 시설로 활용
 - 1988년 김구 강우규 유관순 등이 옥고를 치른 감옥시설과 사형장이 사적 제324호로 지정 - 1995년 독립공원 사적지 성역화 사업 착수/1998.11.5.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
- 독립투사 출신 제헌의원 국회 프락치 사건 - 프락치(러시아어: фракция) : 어떤 목적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다른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1949년 국회프락치 사건 이후 널리 사용
 - 1948.12.1. 국가보안법 제정 :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 정을 알

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부대행위도 광범위하게 처벌 ⇨ 1958년 2.4파동을 거쳐 보다 강화

- 제헌국회에는 보수야당인 소장파 그룹 형성 :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 남북의 자주적 평화통일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보수세력인 한민당과도 대립
- 이승만 정권은 여순사건 후 경찰과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 : 소장파 그룹은 미소 양군 철수 요구, 미 군사고문단 설치도 반대, 친일파 반민특위 활동 강화 요구 ⇨ 1949.6. 미군 전면 철수
- 한민당 후신인 민국당과 제휴하여 견제 시도 : 1949.5.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등 3명 검거/6월 황윤호, 김옥주, 강옥중, 김병희, 박윤원, 노일환, 김약수 등 7명, 8월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
- 6월까지 헌병사령부에 수감/변호인 접견 금지/7.11. 서울지검으로 송치
- 7.2. 국방부는 유엔한국위원단에 외국군 철퇴 등의 진언서를 제출한 것이 남로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이문원과 노일환은 남로당에 가입해 국회프락치로 활동했다고 발표
- 7.30. 10명의 국회의원 기소/9월 3명 추가기소 - 수사당국이 밝힌 증거는 38선을 넘으려다 붙잡힌 정재한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던 박헌영)에게 보내는 암호문서 - 재판부 사광욱 주심판사, 박용원, 정인상 배심판사의 참석하에 오제도, 장재갑 검사가 입회 - 1949.11. 서울지방법원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남로당과의 관계 부인, 취조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 고문으로 인한 허위진술임을 주장/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에서 '증제1호'로 제출한 남로당의 '투쟁보고서'라는 암호문서에 대해서도 아무런 검증 없이 증거능력 인정 - 1950.3.14. 선고재판 : 검찰 측 주장 전면 인용 전원에게 징역 3년-10년 선고 - 항소심 시작 전 한국전쟁 발발/서용길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월북 또는 납북
- 국회의 소장파 의원 제거/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현저히 약화/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 효가 1950년 9월까지에서 1949년 8월 말까지로 단축시키는 개정안 1949.7. 국회 통과
- 이승만 정권의 6월 공세 중 하나로 평가하기도 함 : 6.6. 경찰의 반민특위습격사건/6.26 김구 암살사건과 함께 - 국가보안법의 위력 발휘 첫 사례/친일청산 포기
- 프락치 사건의 중심인물 김약수 의원 - 일제강점기에 항일 사회주의 운동 주도/정부수립 이후에는 국회 내에서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을 이끌어 평화통일운동 전개 - 휘문의숙, 경성공업학교를 거쳐 일본대학 사회과 졸업/같은 고향 출신으로 해방 후 북한에서 조선신민당을 이끌었던 김두봉의 사촌동생 - 김원봉과 교유/1918년 함께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중국 난징으로 건너가 금릉대학에 입학, 영어를 배우면서 독립운동 모색 중 3·1운동 소식을 듣고 1920년 귀국 - 국내에서 '조선노동공제회' 상무간사/1921년 일본으로 건너가 박열(朴烈) 등과 함께 사회주의 사상단체 흑도회 조직/이듬해 2월 서울로 돌아와 우리나라

최초의 계급투쟁선언인 ‘동우 회선언’ 발표/1924년 11월 북풍회 조직 국내 사회주의 운동 주도/1925년 제1차 조선공산 당에도 참여 : 조선공산당 제1차 검거사건(신의주사건)으로 1926년 검거 6년간 옥고 -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간부 선출 거부하고 우익진영인 한국민주당 발기인으로 참가해 조 직부장/당시 조선인민공화국의 조직에도 불참 : 당시의 나는 조선 정치운동의 현단계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단계임을 직시한 까닭이라고 주장/1946년말 토지개혁문제로 한국민주 당과 마찰을 빚자 원세훈과 함께 탈당하여 ‘민중동맹’을 결성 - 제헌국회의원 당선(부산 동래)/1948.8.4. 국회부의장 선출 - 월북 후 1956년 남한출신 인사들의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서 집행위원을 맡아 평화통 일 사업에 관여하다 1959년 반동분자로 몰려 숙청

○ 죽산 조봉암도 국회부의장 역임 후 이승만에 의해 사법살인

2. 총정각(유진오)



○ 캘리포니아 풍 이국적 건축유산의 하나/한성 전기기사 맥렐란의 저택/고든이 설계 : 세브 란스 병원 새문안교회 종교교회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등 설계 - 이명래 고약(총정로 명래한의원의 이명래 막내딸 이용재 여사가 유진오 박사의 3번째 부인 (모두 사별)

■ 방황했던 지식인이 헌법의 아버지?

○ 유진오 -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 문우회 좌익경제모임인 경제연구회 등 활동 - 1927년 단편소설 스리 발표 등단 - 1929년 경성제국대학 수석졸업 후 조교생활 및 예과 강사 - 1932년 보성전문학교 법과 강사(국제법 국제정치).1933년 전임강사/1937년 교수 - 1932년 5월 근로대중의 이익을 표방하는 극단 메가폰 결성 - 1933년 10월 동아일보 객원기

자 : 김강사와 T교수, 창랑정기 등 발표(카프에서 이효석과 함께 동반자작가로 거론) - 1939년 7월 중일전쟁 선전 글 발표 친일활동/10월 조선실업구락부 가입 및 조선문인협회 발기인 간사/11월 조선문인협회 주최 위문문 위문대 보내기 행사 주도/1940년 문인협회 주 최 문사부대 입소훈련 참관 및 지원병훈련소 선전 글 발표/시국강연회 강사 - 1945년까지 임전보국활동 일본어 사용 징병 예찬 등 다양한 형태로 일제 식민정책 옹호 및 침략전쟁 미화 활동 - 1945.8.16. 임화의 요청으로 문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태준 등의 항의로 축출된 후 작가의 길을 접고 교육자 법학자 정치가의 길로 나섬 -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 보성전문학교 교수 겸직/고려대학교 법정대학장(1946-49), 대학원 장(49-52), 총장(52-65) 역임 - 1945.11 학무국에서 대학령 학위령 등 기초 - 1948.6 헌법기초위원 대한민국 헌법 초안 작성 : 내각제/국민 대신 인민 사용(자유인으로서 의 개인을 강조/윤치영이 공산당 용어라고 공박/대한제국에서부터 사용하던 용어인데 공산 당에게 빼앗겼다고 한탄) - 1948.8. 초대 법제처장 (-49.3)

- 1949년 헌법의 기초이론 헌법해의 등 발간 - 1950년대 활발한 학회활동/1954년 학술원 회원/1981년 원로회원(헌법) - 1965년 총장 사임 후 정치활동/1966.9. 민중당(민주당 신파) 대통령 후보 지명/1976.1 민 중당 신한당 합당 윤보선 대통령 후보 자신은 총재 취임/7월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당선 - 1970.1. 와병으로 신민당 총재 사임 - 19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 발족에 참여 고문 추대 - 1980년 국정자문위원으로 신군부 참여



MEMO

3. 사직공원



■ 국가의 영속성을 생각하게 하는 장소

○ 사직 제121호 - 조선 건국 후 1935 한양천도 직후 조영

- 사직(社稷) : 동쪽의 사는 토지신, 서쪽의 직은 곡물신에게 제사/조상신을 모시는 종묘와 함께 왕조국가의 근본이 되는 상징

- 일제강점기인 1924.5. 사직을 끊기 위해 사직단을 공원으로 격하

○ 사직을 지탱하는 힘은 왕조가 아니라 민초에게 있음 : 촛불정신으로 계승



MEMO

헌법개정사 자료



헌법개정사를 통해 본 국민개헌의 중요성

정리: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제헌헌법 제 1 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 년 남한 단독 선거로 선출된 제헌의원(좌파, 중도파 독립투사 제외)들에 의해 제정된 이래 9 차례 개정돼 왔습니다.

이중 4.19 혁명과 6 월민주항쟁 직후에 개정된 2 차례를 제외하고, 7 차례는 불법 쿠데타의 합리화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개악되었습니다.

근대 이래 헌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권, 사회권 등 기본권의 내용과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 통제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사에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것이 적지 않습니다. 헌법은 그 시대의 상황과 권력을 반영합니다.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제 1 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는 주권자 국민이며, 최후 결정권자도 주권자 국민입니다.’ 하지만 지난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바뀌는’ 더 좋은 헌법, 더 나은 국가를 고민하기 위해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과 국민개헌 원탁회의는 헌정사 여행을 통해 8.15 해방, 6.25 동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6 월항쟁 등 격랑의 현대사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헌법은 내용 자체만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글이고, 헌법을 읽는다는 것은 국민 주권을 확인하는 경험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권력’ 이 되어야 한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좌익과 중도파가 빠진, 그러나
사회국가를 지향하는 현대헌법



1948년 7월 18일자 경향신문 1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였다.

제헌헌법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대한한국 최초의 헌법이다. 하지만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한 좌파와 중도파 독립 투사들이 불참한 채 제정되었다.

1948년 5월 31일 국회의원 198명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개회됐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을 기초로 해서 유진오 박사가 초안을 작성했는데 민생복지-사회국가를 지향하며, 정부는 의원내각제, 국회는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의 반대로 정부는 대통령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됐었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임기 4년으로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했다 그 결과 제헌헌법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모습이 혼용된 헌법으로 제정되었다. 제헌헌법은 전문과 10 장 103 조로 구성되었다.

[제헌헌법의 주요 특징]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은 내전(civil war)선언과 같았다. 제헌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해 북에 들어선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뒤이어 제정된 북한 헌법에는 제103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시다”고 명시해 한반도는 두 개의 주권을 표방한 세력이 공존하는 내전 상황을 공식화했다.

*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를 함께 지향하는 헌법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건국 강령 총칙에서 밝힌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의 정신을 이어 받아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를 함께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학 혁명과 3.1혁명 정신을 계승한 대한국민은 독립하면 일본제국주의와 다르게 일등 국민, 이등 국민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간절히 염원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노력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제종의 규정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민주 국가와 같이 정치적 법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유진오(헌법해의, 10쪽)

제헌헌법은 지금의 기준으로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 84 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본으로 삼으며,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밝혔다. 제 85 조에서 광물자원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할 것을 밝혔고, 제 87 조에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등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며,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둘 것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 권리의무를 밝힌 제 2 장에서는 제 15 조에 재산권 행사를 공공 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제한했으며, 제 18 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한에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헌법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과 현실에서 그 조항이 구현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근로자의 이익 균점권은 규정이 폐기될 때까지 실현을 위한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약 법률 위임 남발, 자연법적 천부인권, 사상의 자유, 저항권 등의 이념이 부재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제헌헌법 제 4 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해 북에 들어선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뒤이어 제정된 북한헌법 제 103 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시다”고 명시되어 한반도는 두 개의 주권을 표방한 세력이 공존하는 내전 상황임을 공식화했다.

이후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은 48년 12월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반공체제의 구축

1948년 4.3 항쟁과 뒤 이은 여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공포된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이라는 모순된 지위를 누리며 제헌헌법의 긍정적인 요소를 무력화시킨 동시에 반공우익 세력의 권력 창출과 유지를 위해 악용되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공포된 날부터 곧장 집행되기 시작해 6일 동안 서울에서만 100건의 영장이 발부되었다. 1949년에는 국가보안법으로 11만 8,621명이 검거되었으며, 당시 검사가 기소한 전체 사건의 80 퍼센트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것이었다.

1949년 12월 19일 법률 85호로 공포된 개정 국가보안법은 더욱 확고한 반공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선언이었다. 법정 최고형을 무기에서 사형으로 높이고, 미수죄를 신설하였으며, 심급을 단심제로 전환했다. 또한 전향을 유도하기 위한 보도구금제의 시행과 보도소의 설치, 그리고 소급효를 인정했다. 반공이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친북을 주장하거나 평화통일을 외치면 생명까지도 위협받아야 하는 극단적 반공 독재체제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유지되고 재생산됐다.

[주요 내용]

(1) 전문 및 총강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헌법의 제정의 주체가 국민임을 밝히고,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대한민국을 계승하였음을 선언하였다. 기회 균등과 결과 균등을 동시에 추구할 것을 결의함을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를 함께 추구하는 민생복지-사회국가를 지향함을 분명히 하였다.

전문 제1조에 임시정부 헌장 그대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제2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국민주권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운영의 최고, 최후 결정권자는 주권자 국민임을 분명히 하였다. 제헌헌법의 전문은 4.19 혁명 후 헌법(1960)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제헌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

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 년 7 월 12 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헌헌법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기본권 조항

제헌헌법의 특징 중 하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민생복지-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교육을 받을 권리(무상 초등교육),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등, 특히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을 규정하였고, 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였다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 관련 조항>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치적 민주주의 관련 내용>

제 9 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 10 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 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 11 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 12 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 ~~사상~~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 13 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 27 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 28 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통치기구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로 하고 부통령을 두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4년임기, 1차 중임으로 국회에서 선출하였다(간접선거).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제출권,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 처분권, 계엄 선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국회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임제였고 국정감사 및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었다.

국무원을 두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즉, 국무원은 단순한 심의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이었다.

법관은 징계 처분에 의해서도 파면이 가능하였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하였고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하였다.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위헌 법률심사의 제청만을 할 수 있었다.

탄핵의 심판은 국회의 소추 의결에 의하여 탄핵재판소가 하도록 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두도록 했다.

(제 32 조)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제 53 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제 55 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 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 차 중임할 수 있다.”

(4) 경제 조항

제헌헌법의 경제 질서는 사회국가를 지향하였다. 현행 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보다 사회복지 성격을 더 많이 지닌 경제질서였다.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보

다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 우선임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 84).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했다 (§ 86). 대기업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점권도 제헌헌법의 경제원리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 .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유 경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5) 헌법개정조항

헌법의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MEMO

京鄉新聞

發行所 廣州市廣島路1號34
電話4757番
發行部 總編輯 韓昌
印刷部 印刷所 廣島路
一頁四行
人版에서 가장 주목
취향 不偏不倚의 기사를
필적 필적하는것이요
다
(가-하일)

離合集散이無雙한國會!

兩改憲案拔萃條項

一六三票對〇으로遂通過

秘密會談遂開

靜寂한空無裡에

트氏不出馬再闡明

最後報告會議會에傳達

六分間秘

1952년 7월 6일자 경향신문

6.25 동안 직전인 1950년 5월 30일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동안 중인 1951년 11월 30일 재집권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43대 19라는 압도적 차이로 부결되고 말았다. 민국당은 1952년 4월 17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이승만은 이에 맞서 다시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1952년 5월 26일 부산을 비롯한 경남과 전남북 23개 시, 군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6.25 동안 발발에 임시수도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도 선포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개헌 때문에 선포한 것이다.

그날 아침 47명의 의원을 태운 국회 통근버스가 헌병대 본부로 끌려갔고, 이 중 10여명의 의원들이 국제 공산당과 연계됐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김성수 부통령이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던지고 이종찬 참모총장이 계엄군 파견을 거부하는 등 반발이 일어났고 여기에 이승만의 집권을 연장해 주되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적 절차에 입각하도록 만들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맞물려 ‘발체 개헌안’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장택상 국무총리는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국회 양원제’와 야당이 주장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발체한 개헌안을 제출했다. 1952년 7월 7일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열린 국회에서 테러 단체의 위협 하에 기립 표결로 강행통과 됐다. 이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직선제로 바뀌었고 국회는 양원제로 되었다.

발체 개헌안은 이승만이 발체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것은 당시 ‘반(反) 이승만’ 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국회의 세력관계로 볼 때 국회에서 간선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방식으로는 재선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선거는 전시 상황과 국가보안법 체제라는 특수 상황이 맞물려 경찰과 특무대, 여당과 사회단체 등이 주동이 되어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항상 직선을 통해 집권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었다.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일반 민중은 전쟁 상황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최고통치권자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종의 의회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우익 청년단인 족청을 중심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자유당을 창당한 이승만은 1952년 8월 전쟁의 포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에 재선된다. 자유당은 1954년 5월 3대 국회선거에서 재석 203석 중 114석을 차지하여 과반을 확보했고, 3선 개헌을 목표로 무소속 67명 중 34명을 회유 입당시켜 2/3 선인 136석을 확보하는 등 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했다.

52년 1차 발체 개헌은 6.25 동안 중에 이루어졌으며,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 헌법 개정의 공고와 국회에서의 토론 절차없이 개헌이 이루어져 헌법개정 절차를 위반한 위헌적 개헌이었다.

[주요내용] - 통치기구 개악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 31 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제 32 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제 53 조)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 회의에서 신임 결의를 얻지 못한 때는 국무원은 총사직 하여야 한다.((제 70 조 2)



MEMO



1954년 11월 30일자 경향신문 1면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욕은 멈추지 않았다. 휴전 이후 1954년 5월 20일 총선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그해 11월 27일, 재임에 국한되는 대통령 임기 조항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려는 2차 개헌이 추진된다. 이 개헌안은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무효 1표, 기권 6표, 결석 1표로 개헌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1인 136명에 1표 부족해 부결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인 11월 29일 자유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를 다시 열어 부결을 취소하고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는 203명의 2/3는 135.333...이므로 사사오입의 원칙에 따라 135명이 3분의 2이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다는 억지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정치가 코미디가 되었다.

2차 개헌은 대통령 임기 조항만이 아니라 모두 30개 조항에 걸쳐 수정, 삭제, 증보가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의 요구로 사회적 경제지향 조항을 자유시장 경제 내용으로 대폭 변경하였다.

또한 분단체제를 상징하고 있는 영토 조항은 개정헌법 제 7 조 2 항에 “국회 가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 선거권자 3 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개정을 보다 더 어렵게 했다. 반공 독재체제는 분단 체제와 함께 더욱 강화됐다. 그러므로 2 차 개헌은 헌법개정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개헌이었고,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항을 대거 수정한 반민생적 개헌이며, 분단 고착화 개헌이었다.

[주요내용]

(1)통치기구 개악

헌법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3 선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을 헌법을 부칙에 추가함

(제 55 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 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 차 중임할 수 있다.”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 55 조제 1 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함 (연대불신임의 폐지)

(1)기본권 -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 신설

중대 정책에 대한 의무 국민투표제를 신설,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 변경을 위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함 (제 7조 2), 헌법개정 발의권을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에게도 부여하도록 함(제98조)

(2)경제 조항 - 미국의 요구로, 자유시장 경제적 요소를 대폭 수용함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그대로 존속)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그대로 존속)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

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54.11.29.]~~



MEMO

독자적으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헌법재판소를 새로 설치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정당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 기본권 제한 조항이 철폐되었고, 신문·정당 등의 허가제도 폐지됐으며, 국가보안법에서 언론 조항이 삭제됐다.

[주요내용]

(1)전문 ; 개정 헌법은 제헌헌법의 전문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2)기본권 조항:

인권조항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고, ②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과 검열을 금지했다. 또한 ③정당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강제 해산 제도를 새로 채택했다.

제 10,11, 13 조: 거주 이전, 통신 비밀, 주거의 침입과 수색으로부터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최대 보장하고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를 삭제하였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제28조 ①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개정 1960.6.15.>

(3)통치기구:

4.19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권력분립과 지방자치를 강화한 것이었다.

1)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하고, 실질적 행정권은 민의원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제 69 조) 내각수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원(내각)에 속하게 하였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내각은 민의원 해산권을 가졌다.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

도록 했다(제78조),

3) 헌법재판소를 신설해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했다

①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②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③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④정당의 해산, ⑤탄핵재판, ⑥대통령·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 83-3). 현행헌법과 다른 점은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과 선거재판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 소원은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1961년 헌법재판소법 만들어 시행하려고 했으나 5.16 쿠데타로 무산됨)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선제를 헌법상 보장하여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하도록 함(제97조)

5) 선거의 공정을 위해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함(제75조의2)

6) 경찰의 중립화를 위해 필요한 기구를 설치토록 함(제75조)

제75조 ①행정 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4) 헌법 개정 조항

헌법개정 절차에서 국민발안제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헌법개정의 제안을 대통령과 국회외에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헌안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써 하도록 했으며 국민투표를 필요하지 않았다.

(*) 4.19 헌법의 교훈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내각제로 개헌했으나, 총리와 대통령 사이의 권력 배분을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두 세력 간의 갈등으로 혁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결정적으로 5.16 쿠데타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매클루더와 주한 미국 대리 대사가 요청한 쿠데타 저지 목적의 병력 동원 허가를 윤보선 대통령(구파)는 실질적 '군통수권이 없다'며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군사반란을 방조, 헌정 질서 중단을 초래케 함.

[헌법 제 61 조 제 1 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 72 조]에서는 '선전(宣戰), 강화(講和), 계엄안(戒嚴案), 계엄 해제, 군사(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및 각군 참모총장의 임면(任免)'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의 실질적 행사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京鄉新聞

發行編輯 韓昌愚
發印所人 韓昌愚
主筆 金八峰
編輯局長 崔錫采
發行所 서울특별시 소공동 74
京鄉新聞社
電話 {㉠} 3181~4 {㉡} 4001~4 {㉢} 9663
編輯局直達 ②9663號
購讀料 1連20圓月600圓



비밀인

1960년 11월 29일 경향신문 1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3·15 부정선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4·19 혁명의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시위에서 군중들을 살상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는 점점 강해졌고, 1960년 10월 11일에는 4.19 혁명 희생자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 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하였다. 이에 11월 29일 3차 개헌 6개월만에 국회는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헌 후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부정 축재 특별 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 검찰부 조직법」 등 일련의 소급 입법이 제정되었다.

1960년 11월 헌법은 신체의 자유, 참정권, 재산권을 제한하는 소급입법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헌법개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주요 내용]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부칙)

“전 2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부칙)



MEMO

◎精選這公佈式光盤◎

第3 共和國기를確立

州憲法公布式舉行

[illegible]

日首相、金大平

—政府借款2億弗協力

民間貿易債權 3 年
4 千 5 百萬弗

【東京에서】李祖儀特派員發 兩日本官報稱
 昨日下午三時 首相府에서 大野 自民黨總幹事 會黨 一하고 議水閣에서 對談 第一
 一會、大野總 會黨式으로



池田日實權

美利堅合衆國 內務省 ① 國
 3 庫券 10 國庫券
 ②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③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④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⑤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⑥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⑦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⑧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⑨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⑩ 國庫券 10 分 國庫券

美利堅合衆國 內務省 ① 國
 3 庫券 10 國庫券
 ②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③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④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⑤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⑥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⑦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⑧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⑨ 國庫券 10 分 國庫券
 ⑩ 國庫券 10 分 國庫券

[illegible]

京鄉新聞

[illegible]

『一曰語錄』
예술은 사람들을 순
화시키는 하나의 수단
이다.
(해설로이)

金銀・宝石・時計
正金社
商銀本店駐
三〇九八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육군 소장은 군정 기간 동안 ‘반공법’을 제정하고 민주 인사를 탄압하였다. 국회는 해산되었고 군인 20명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국회 역할을 대신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6.6일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 26일에는 헌법개정안을 공포했다.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은 국가재건

헌법역사기행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100년사 자료집 63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했던 쿠데타 세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공을 국사의 최우선 순위로 한다고 천명하는 동시에 국민투표법을 제정해 우리 헌정사 최초로 국회 심의 없이, 국민투표만에 의한 개헌을 추진했다. 쿠데타 세력은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불과 12일 전인 12월 5일에야 경비계엄을 해제했고, 12월 17일 개헌안을 확정했다. 새 헌법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 습득이 불가능했음은 물론이다.

군정 억압 체제 아래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나 국민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악용했다. 이렇게 마련된 5차 개헌 헌법에서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임기 4년의 대통령제가 복원되었고, 지방자치를 제거해 중앙권력을 강화했다. 4.19 혁명 후 헌법에 신설된 대법원장 선출제는 시행도 못해보고, 헌법재판소는 구성해 보지도 못한 채 폐지되었다. 정치권의 참여가 배제된 상황에서 62년 7월 군사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5차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인권 규정이 존재했지만, 정당 설립을 규제하고 정당추천제, 의원후보제 등을 채택하여 실질적인 권위주의 통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12월 31일 공포된 정당법은 제1당에게 무조건 비례대표 의석의 과반수를 줌으로써 정권 안정을 꾀했다. 1963년 11월에 치러진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정희의 공화당은 전체 투표수의 33.5 퍼센트만을 득표했음에도 74.8 퍼센트의 국회 의석을 가져갔으며, 군인들이 정치를 지배하는 군사주의 정권으로 나아갔다.

62년 헌법은 총칼로 권력을 탈취한 군인들이 기존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개정 절차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밟아 새로 만든 헌법이므로 새로운 헌법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헌국회를 통한 헌법 제정의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헌헌법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5·16 쿠데타로 시작된 박정희의 통치는 ‘정당화되지 않은 폭력에 의한 불법적 지배’에 지나지 않다.

[주요 내용]

(1) 전문

헌법 전문에서 1962년 헌법이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성립하였음을 명시하였다. 4.19혁명을 의거로 폄하하고,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였다. 그 후 이 문구는 1980년 헌법에서 삭제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2) 기본권 조항

제3공화국 헌법은 겉으로 보기에 입헌주의 헌법으로 보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제8조를 신설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해 영장청구는 검찰관에 의하게 하는 등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언

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무원의 노동 삼권을 제약하였으며,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과 공무원 파면 청구권을 폐지하였다.

제18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③ 신문이나 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④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제 6 조 ①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3) 통치기구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환원하고 대통령선거를 직선제로 하였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② 국회 구성을 단원제로 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위헌 법률심사권과 정당해산 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제99조) ⑤감사원을 신설했다.

정당국가 표방 -국회의원 공천제를 도입하여 무소속 출마를 불허하고(제36조),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다. (제38조)

(5) 헌법 개정

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1/3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다. 즉, 국회와 국민발안에 의한 제안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 제안권은 폐지하였다. 개헌안은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도록 하였다.

부칙에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부칙 제5조)

[11] 제7396호
The Kyunghyang Shinmoon
1969년 10월 18일 (토요일) (2판) [월간]

改憲 확정

이젠團結...다함께前進
朴대통령 투표결과보고특별단화




바편版圖...與村野都 무너져

국민투표서

贊成 7백25만표

共和 2대1比率로 린드

투표율 77.2% 반대 3백46만표

하오3시현재
開票 96% 끝내

史上 처음으로 서울서 伯仲

不法 사례 엄중 처리

朴대통령, 판계판에 저지

無効 소송 여부 결정

전국 開票 상황

구분	贊成	共和	투표율
全南	2,252,626	1,469,181	894,807
全北	2,174,279	1,703,888	3,878,167
京畿	3,114,877	2,135,891	5,250,768
忠清	1,753,564	1,115,034	2,868,598
大邱	1,112,770	717,345	1,830,115
釜山	1,405,902	1,171,369	2,577,271
仁川	1,585,289	1,220,040	2,805,329
光州	881,013	575,957	1,456,970
大田	1,040,113	777,220	1,817,333
全南	1,387,441	889,442	2,276,883
全北	1,945,132	1,295,394	3,240,526
慶州	89,857	30,653	120,510

서울시내 開票 결과

구분	贊成	共和	투표율
全南	1,114,877	717,345	1,830,115
全北	1,405,902	1,171,369	2,577,271
京畿	1,585,289	1,220,040	2,805,329
忠清	881,013	575,957	1,456,970
大邱	1,040,113	777,220	1,817,333
釜山	1,387,441	889,442	2,276,883
仁川	1,945,132	1,295,394	3,240,526
慶州	89,857	30,653	120,510

경향신문



1969년 10월 18일 경향신문 1면

두 번 임기를 맞은 박정희 대통령은 1차에 한해 중임을 허용한 헌법을 고쳐 한 번 더 대통령직을 차지할 욕심을 품게 되었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 의원 3명을 변절시켜 122명의 개헌 지지 서명을 받아냈다. 신민당은 변절한 의원들의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하기 위해 1969년 9월 7일 당을 해산하면서 ‘신민회’라는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하는 비상책으로 대응했다. 신민회는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개헌 반대 농성을 벌였지만 개헌 지지 의원들은 그해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28분 국회 제3별관에 몰래 모여

122명 여당 의원은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불도 켜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 사회로 2분만에 개헌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찬성 122표 반대 0표), 야당은 ‘비밀투표는 무효’라며 격렬하게 반발했고, 학생들은 치열하게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

「국민투표법」의 개정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 이루어졌으며, 국민투표 과정에서도 불법시비가 많았습니다.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군사정권은 역술인과 사이비 신흥종교 집단까지 동원해 박정희를 칭송했다. 당시 공화당 의장인 윤치영은 ‘반만년 이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박정희의 대통령 연임만이 민족의 살 길이라고 떠들어 댔고, 여론언론과 학자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해 나갔다 결국 개헌안은 그해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투표율 77.1% 찬성 65.1%로 가결됐습니다. 이 ‘3선 개헌’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본격적인 장기 집권의 길을 가게 되었다.

[주요 내용]

1969년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 연장(4선은 금지)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를 강화하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허용하였다.

제 69 조 ②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제 39 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61 조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MEMO

■1972년 12월 27일 7차 개헌(유신헌법) -최악의 개헌

1972년 11월 22일 (수요일) 제8355호 The Kyunghyang Shinmun 1972년 11월 22일 (수요일) [2면] [월간]

國民團結을誇示
維新課業은 이제부터

維新憲法 확정

全國開票狀況 (下午3時開票時)

市道	有權者數	投票者 (%)	無票 (%)	票數	票率 (%)	無票率 (%)
全	3,078,325	2,478,385 (80.54)	2,045,941 (66.5)	416,474	74.0	25.0
京	998,353	979,346 (98.06)	772,749 (77.3)	127,512	88.9	11.1
畿	1,727,059	1,625,603 (94.06)	1,501,859 (87.0)	123,744	84.6	15.4
江	851,004	826,398 (97.1)	791,601 (93.0)	34,797	81.1	18.9
忠	698,158	662,739 (94.9)	621,723 (88.9)	41,016	84.8	15.2
西	1,370,401	1,236,533 (90.2)	1,213,614 (88.5)	22,919	84.6	15.4
大	1,152,919	1,074,507 (93.1)	976,482 (84.7)	98,025	80.7	19.3
光	1,897,859	1,734,121 (91.3)	1,620,541 (85.4)	113,580	89.0	11.0
仁	1,111,570	1,038,301 (93.3)	983,061 (88.4)	55,240	87.0	13.0
南	1,538,028	1,465,227 (95.2)	1,383,424 (90.4)	81,803	87.7	12.3
濟	182,536	173,290 (94.9)	119,555 (65.5)	53,735	86.0	14.0
計	15,076,395	14,286,355 (94.7)	13,083,571 (86.8)	1,202,784	85.7	14.3

國民投票서 贊成90% 넘어
下午2시現在 開票95.89% 끝내 投票率91.1%

南北赤4차 중絶을
韓赤專權局 離散家族 학이

維新의領導아래이룩하

京郷新聞

간기음산에 판도

1972년 11월 22일 경향신문 1면

1971년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당시 야당후보인 김대중은 539만 표를 획득해 634만 표를 획득한 박정희보다 불과 95만 표가 적었다. 박정희는 선거 막바지에 “나에게 마지막이 될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신임해 준다면 유능한 후계 인물을 육성하겠다”며 읍소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흑색 선전물을 대량 살포하는 등 온갖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다.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도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예고했다. 박정희의 공화당이 131석, 신민당이 89석을 획득했으나 야당은 서울의 19개 선거구에서 18석을, 32개 도시의 64개 선거구 중에서 47석을 획득했다. 관권·금권·선심공세에 부정선거 의혹을 감안한다면, 박정희 정권은 이미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남북한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북한을 국토 수복의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 남북 관계의 대전환이었지만 박정희 정권은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 성명을 이용한다. 학생 시위가 계속되고, 각종 사회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해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며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특별선언과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또 초헌법적인 국가긴급조치권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한 뒤 10 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로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1972 년 10 월 17 일, 10 월 27 일 비상국무회의에서는 새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치러져 투표율 91.9%, 찬성 91.5%로 11 월 21 일 이른바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1/3과 대법원장, 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 국회해산권 · 법률안거부권을 안겨주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은 바로 대통령이었고, 당연하게도 대통령의 연임제한은 없었다. 결국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99.9퍼센트의 득표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제4공화국 헌법인 유신헌법은 이전 헌법과 달리 규범 자체가 입헌주의에서 벗어난 권위주의 헌법이다. 유신헌법에는 박정희 독재 정권의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헌법 전문에 ‘평화통일 원칙’을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반면 행정, 입법,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국회 외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대통령 스스로 의장이 되어 대통령선출권과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권을 부여했다.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연장하고 중임 제한은 철폐했으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국회의원 3분의1 추천권,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회부권을 부여했다. 또한 대통령은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했고 법관을 징계 처분에 의해 파면할 수 있도록 바꾸고, 헌법재판권을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허가 금지조항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구속적부심제를 폐지하였다.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 배상을 금지시켰고 근로 삼권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였다. 국회 회기를 단축하고 국정감사권 조항을 삭제했으며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했다. 또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없이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1972 년 비상조치는 헌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위헌 조치였으며, 헌법을 정지시키고 헌법을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사실상 대통령의 절대군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 쿠데타였다.

[주요 내용]

(1)전문과 총강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총강 제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삭제하고 헌법 국민발안권을 폐지하여 국민 주권주의 원리를 훼손했다

제 1 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124조 ① ~~헌법의 개정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2) 인권 조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심히 제약하였다.

(1) 인권의 제한에 관한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을 대폭 추가했다.

(2)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검열·허가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3) 군인·경찰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4) ‘일반적 법률유보’의 제한사유에 ‘국가안전보장’을 추가하였다(그 전의 헌법에는 제한사유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5)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② ~~군인·군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 이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29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통치기구

입법, 행정, 사법권의 통합을 추구하는 반민주적 헌법을 제정하고 소위 체육관 선거라고 불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1)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어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1/3 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당선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2) 대통령권한의 대폭 강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대통령에게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 우월한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한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면서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음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②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③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④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회부권을 신설하였다. 또한 ⑤대통령 중임이나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 49 조)

“대통령은 천재 ·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 외교 · 국방 · 경제 · 재정 · 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3 조 1 항)

(3) 국회의 권한 축소: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국정감사권을 폐지하는등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였다. (제 59 조 1 항)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4) 사법권의 약화: 위헌법률심판권과 정당해산심판권을 헌법위원회에부여해 법원의 권한을 축소시켰다(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만을 가짐). 또한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징계처분으로 법관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위축시켰다(이것은 대통령이 법관을 파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 103 조 2 항)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104 조 1 항) “법관은 탄핵 · 형벌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 정직 · 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5) 지방의회 구성의 연기: 지방의회의 구성을 통일 이후로 미뤘다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 10 조)

“1972 년 10 월 17 일부터 이 헌법 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부칙 제 9 조)



MEMO

새歷史隊列선 누구든國民품에 包容

全대통령 談話 維新의 갈등·모순 歷史속에 흘려야

全대통령(왼쪽) 27일 晚間新聞記者 會見中 記者(右)가 있다.

恣意的改憲다시는 없어야

派黨·지역利益 초월, 나라위해 獻身할 때

제5共和國憲法발효

世宗회관서 公布式 國會·政黨 자동解散

立法會議員들

하오 立法會議法 議員명다

京鄉新聞

發行所: 大韓民國 京畿道 京畿縣 九里 京畿新聞社
 社址: 京畿道 京畿縣 九里 京畿新聞社
 電話: (031) 390-1111

代表: 金容植
 編輯: 金容植
 社長: 金容植
 電話: (031) 390-1111

發行人: 金容植
 電話: (031) 390-1111

印刷: 京畿新聞社
 電話: (031) 390-1111

發行人: 金容植
 電話: (031) 390-1111

發行人: 金容植
 電話: (031) 390-1111

發行人: 金容植
 電話: (031) 390-1111

發行人: 金容植
 電話: (031) 390-1111

發行人: 金容植
 電話: (031) 390-1111

發行人: 金容植
 電話: (031) 390-1111

發行人: 金容植
 電話: (031) 390-1111

1980년 10월 27일 경향신문 1면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연회를 즐기던 도중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 당한다.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붕괴했지만 그해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월 17일 내란을 일으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그해 8월 13일 가택 연금 상태였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자 8월 27일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전두환 정권은 10월 27일 새 헌법을 공포하며 민주공화국을 자칭했지만 그 내용은 권위주의 헌법을 벗어나지 못했다. 헌법 전문에는 ‘4·19 의거’와

‘5·16 혁명’을 삭제하고 ‘제 5 공화국’을 삽입했다.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유지했다. 여전히 군부에 의한 폭압적 독재체제가 유지된 것이다.

전두환 독재를 정당화한 8차 개헌안은 7년 뒤 6월 항쟁이라는 국민의 힘으로 철폐를 맞게 된다.

[중요 내용]

(1) 전문

62년 헌법부터 들어있는 헌법전문의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 5 공화국의 출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 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 5 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 (전문)

(2) 기본권 조항

인권 조항에 전반적인 진전이 있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0. 26 직후 당시 이원집정부제에 관심을 가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발의안을 만들기 위해 개헌 심의기구를 만들고 최초의 헌법연구반 보고서 등 다수의 개헌 관련 자료를 생산한 것이다.

(1)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을 대폭 삭제하였다.

(2) 행복추구권을 신설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3) 무죄추정, 연좌제의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불가침, 환경권, 적정임금보장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4) 구속적부심사조항과 ‘권리와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을 되살렸다.

(5) 국가가 정당운영자금을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소비자 보호규정을 신설하였다.

(3) 통치기구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명시하고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통치기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체육관 선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은 약간의 제한을 두었지만 그대로 유지했다.

(1)국회: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신설하고(국정감사권은 규정하지 않음), 비례대표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한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함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1/3에 대한 대통령의 추천권도 폐지되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77 조 3 항)

“국회는 특정한 국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제97조)

(2)대통령: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는 7년 단임으로 하였다.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긴급조치권을 폐지하는 대신 비상조치권을 부여하고, 국회의 사후통제(승인 및 해제 요구)를 받도록 하였다. 한편, 국회해산권을 유지하되 일정한 요건을 부가하였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39조1항)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45조)

(3)법원: 일반 법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복귀시키고, 징계 처분에 의해 법관을 파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위헌법률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은 유신헌법에서와 같이 헌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4) 헌법 개정 절차의 일원화

헌법개정의 제안권을 대통령과 국회에 부여한 것은 유신헌법과 같았으나, 헌법개정절차를 일원화하여 대통령이 제안했던 국회가 제안했던 관계 없이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 부칙 (국가보위 입법 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두어 새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 전날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정치활동규제를 위한 소급입법의근거규정을 두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는 어떤 이유로도 제소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이상 부칙 § 6).

* 10. 27 개헌 후, 국보위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하여 1981.4.10.까지 존속하며 국회를 대신하여 163 건의 법률을 개악하였음(정당관계법 및 정치활동규제관련법, 언론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국회법까지)

京鄉新聞

아마코스트 接見

새憲法 공포

平民

위원장 金大中씨 54개

참여議員 모두 28명 〇 **투표율**
平壤民主黨가 1천 90萬
선언 수송을 할 것이니 참정권이
선언의 權(권)을 大(대)하게
擴大(확대)한 것이다.
平壤民主黨가 1천 90萬
선언 수송을 할 것이니 참정권이
선언의 權(권)을 大(대)하게
擴大(확대)한 것이다.

서울·仁川·全州서
分黨이후 實勢가 늡

[illegible]

新民主主義

76 헌법역사기행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100년사 자료집

민주화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그해 6월 29일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는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였고 여야 합의를 통해 10월 29일 새 헌법이 공포된다. 새 헌법은 전문,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9차 개헌에 따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입헌주의를 회복한 헌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6월 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헌법개정 국민운동본부를 배제한 채, 여야 8인 정치회담에서 대통령에 목 마른 정치인들이 5년 단임 직선제를 급히 통과시키느라,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바로 잡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다. , 예를 들면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도, 정당의 국가 후견제도, 대통령 우위 삼권 제도 등을 바로 잡지 못했다. 또한 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강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국민발안제, 공무원 파면청구권, 읍,면,장 직선제 등 4.19 헌법의 장점도 살려내지 못했다.

한국사회학회가 1986년 수집한 조사 자료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부의 집중과 불평등,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권 및 노동권 강화와 실질적인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실제로 1987년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20, 30대 청년들은 대통령직선제 말고도 노동자와 농민의 기본적 권리가 인정되는 세상,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시민이 정치적 결정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공동체를 열망했다. 그럼에도 개헌 협상을 주도한 정치권은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만을 따지며 이러한 시대정신을 외면했던 것이다.

[중요 내용]

(1) 전문 및 총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복원하는 한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를 넣고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했다.

총강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명시했다. (제5조 2항)

(2) 기본권 조항

1987년 헌법은 인권조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적법절차 조항을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구속이유고지 및 구속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강화하였다.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를 다시 규정하였고,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신설했다. 또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명시했다.

1. 적법절차조항을 신설하고 체포·구속시의 고지 및 가족에의 통지 의무를 명문화함 (제12조)
2.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과 검열 금지 규정을 신설함(제21조)
3. 형사 피의자와 불기소 처분자의 보장 청구권을 보장을 확대함 (제28조)
4.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과 국가구조 청구권을 신설함(제27, 30조)
5.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명문화 함(제32조)
6.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업체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제33조)
7. 생활권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여자·모성·노인·청소년·생활무능력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였다(제34조)
8.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 37 조 1 항)

(3) 통치기구

통치기구에서 가장 변화는 대통령선거를 직선제로 바꾸고, 헌법재판소 제도를 부활한 것이다.

(1) 국회: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국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변경하였다.

(2) 대통령: 대통령선거를 직선으로 하고, 임기는 5년 단임제로 하였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폐지하는 대신 긴급명령권을 신설하여 그 발동 요건을 강화하였다.

(3) 법원: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변경하고(명칭변경),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대법관의 임명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4) 헌법재판소: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부활시켰다(헌법재판소 제도는 1960년 6월 헌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가 1962년 헌법에서 폐지되었다). 또한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포함시켰다(1960년 헌법은 헌법소원을 규정하지 않았다).

8.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67 조 1 항)
9.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 70 조)
10.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폐지 등,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을 강화함(제 76 조)
11. 국회해산권을 폐지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킴 (제 57 조)
12. 국회의 연간 회기일 수 제한을 폐지함(제 47 조)

13.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함
14.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대통령제의 요소를 강화함 (제 63 조)
15. 대법원 판사제를 폐지하고 대법관제를 부활시키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제 102 조·제 104 조)
16. 헌법재판소제도를 강화해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함(제 111 조 1 항)

[별첨] 아직 청산되지 못한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조항

1987 년 현행 헌법은 비록 6 월 항쟁의 열기 속에서 만들어진 헌법이었으나, 여야 야합으로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권위주의 군부독재 시대의 잔재가 상당히 남아있다.

(1) 총강과 기본권 조항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③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박정희 유신정권의 잔재인 공무원 이종 배상 금지 규정,

①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5.16 쿠데타 잔재)

[제33조]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7조]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기본권 전체를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통치 구조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헌헌법에는 행정부 수반)

제 72 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72년 유신 때, 국민발의 국민투표권을 폐지하고 대신 신설함)

제 76 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발할 수 있다. (80년 잔재)

제 43 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64년 헌법 제 35 조: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겸직 조항 승계)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5.16 쿠데타 잔재)

제 89 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19 헌법

제 72 조에는 ‘의결’이었음)

16. 검찰총장·합동참모 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제 90 조 국가원로 자문회의를 두고, 의장은 전직 대통령으로 한다.

제 85 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80년 잔재)

제 92 조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통자문회의를 둔다. (유신 쿠데타 잔재)

제 97 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5.16 쿠데타 잔재)

제 98 조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16 쿠데타 잔재)

제 114 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0년 헌법에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04 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5.16 쿠데타 잔재)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19 헌법 제78조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이 호선하고 대통령

이 확인함).

제 111 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5.16 쿠데타 잔재)

(3) 경제 조항

[제 127 조] 과학기술을 경제 성장에 종속시키는 도구가 된 조항

-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5.16 쿠데타 잔재)



MEMO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및 국민개헌원탁회의 소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및 국민개헌원탁회의 소개

1. 단체의 역사와 개요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20여개 단체가 모여 지난 2017년 3월 17일 촛불시민혁명의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등 3당의 졸속개헌, 정략개헌반대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국민참여개헌 촉구운동을 선도적으로 펼쳐 온 시민사회의 개헌운동단체임
- 그후 4월 6일등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5개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시민의회 소집을 통한 국민참여개헌>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대선후보와 국회개헌특위로부터 국민참여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공식문서로 받아냈음
- 이후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2018년 6월까지 실현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시민, 시민사회단체, 헌법관련 연구자들과 연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음
- 여야정당의 정략과 무능, 무책임으로 개헌정세가 어려워지고 기본권과 자치분권중심의 대통령발 개헌안 발의가 추진되면서 최소한 직접민주제개헌과 선거법개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10대개헌안 선정을 위한 1000인 원탁회의>를 성사시켜내면서 지역과 부문을 포함한 ‘국민개헌원탁회의’로 확대 개편해왔음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및 국민개헌원탁회의 참가단위
개혁입법네트워크, 국민주권시대, 정의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NGO연구자실천연대, 민주실현주권자회의, 주권민주주의포럼, 만민공회, (사)부천시민교육센터, (사)밝은 마을, 광주시민주권행동,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무궁화클럽, (사)함께 배움, (사)생물다양성한국협회, 통일염원시민회의, 한국주민운동교육원, 강북구주민참여개헌 네트워크,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노원지부, 아산시민연대, 안산시민정치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2. 제반사업과 활동

- 3당야합 개헌추진 저지 긴급회의(2017/3/17): 주요 정당, 후보에게 국민이 빠진 졸속개헌안 철회와 개헌공약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결정, 성명서발표
- 졸속개헌반대 시민캠페인(4/1,4/15,4/29): 광화문 광장
- 제정당 및 후보들에 대한 국민참여개헌 공개질의서 발송및 기자회견(4/6): 국회
- 국민참여개헌에 대한 주요 후보들 공약과 국회개헌특위의 입장 확인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
 - 특히 문재인 후보는 국민참여개헌기구 구성 및 2018년 지방선거시 국민투표약속
 - 국회개헌특위는 국민참여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5당 대선들이 개헌에 관한 약속을

도표로 정리해서 보내옴

- 국민참여개헌촉구 기자회견(6/24): 광화문광장
- 국민참여개헌 1차 범시민토론회 개최(7/21)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준) 결성 기자회견 참가(8/29)
- 국민참여개헌 2차 범시민토론회 개최(9/8)
- 국민소환제서명운동 및 대국회 규탄 광화문 기자회견(9/23)
- 국민소환제 거리서명 및 캠페인 지속(10/21, 10/28): 광문광장
- 성북구 위탁 주민개헌교육 10강(10/10~11/7): 55명 등록, 30여명 참가
- 국민소환제 개헌 100만 서명운동
- 국민 중심개헌 쟁점 항목에 대한 내부 조율 토론회(10/24~25, 봉도수련원)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참여연대직접민주제개헌 공동주최(11/1)
- 정치개혁 및 개헌촉구 시민한마당 참가(11/11)
- 행정안전부 주최 국민참여제도화 관련 토론회 참가(11/14)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주최 4차 개헌토론회(11/21, 국회): 권력구조와 사법개혁
- 전철협 주관 토지공개념개헌 토론회(12/26)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노원지부 개헌캠페인(2018/1/16)
- 강북구주민참여개헌네트워크 주최 강북주민 개헌교육(1/26)
- 국민개헌 1000인 원탁회의추진 및 사전 지역 토론회(강북, 아산, 광진구, 인천, 부천 등)
- <내 삶을 바꾸는 주권자헌법> 출판(2/3)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박주민의원실 주관 직접민주제개헌 토론회(2/6)
- <10대 국민개헌안 선정투표>시작(2월 초)

<https://goo.gl/forms/HAIU0vvGSiczdNJr2>

- 민주평화당과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 토론회(2/27)
- 6월개헌과 직접민주제 실현촉구 1000인 국민개헌원탁회의 기자회견(2/28)
- 10대개헌안 선정 국민개헌원탁회의(3/3): 천도교대교당 강당 350여명 참가
 - 여야 각 정당 정부의 국민개헌자문특위의 참여 및 10개헌안 전달식
- 국민개헌1000인 원탁회의 선정 10대 개헌안 입법청원 기자회견(3/14)
- 대자유한국당 비판 성명(3/18): “개헌안, 6월국회 여야합의 발의는 꿈수다”
- 대국회, 대정부 성명서발표(3/18): 대청와대 국민주권을 위한 촛불개헌 촉구
- 청와대개헌안에 대한 긴급 성명서(3/22):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개헌촉구
- 대통령 개헌발의안에 대한 긴급 성명서(3/26): 헌법 국민발안제 반영하라!
- 대통령개헌안 발의이후 개헌운동의 발향과 전략 워크숍(3/26)
 - 핵심조항(헌법발안제, 권력구조, 기;본소득 등)에 대한 공론조사 요구
 - 국민개헌원탁회의 주최 12대개헌쟁점공론조사 실시 결정
 - 직접민주제활동가를 위한 풀뿌리헌법교실 개최 결정
- 안산시민정치포럼 직접민주제실현 6월개헌촉구 기자회견(4/2)

-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한 논평(4/3)
- 국민개헌넷 주최 국민개헌촉구 행사 참가(4/7)
- 국민개헌원탁회의 주최 12대개헌 쟁점공론조사 돌입(4/18)
- 직접민주제 실현 풀뿌리헌법교실 개강(4/19~5/10): 4회 강좌
- 위헌판결 국민투표법개정시한 종료와 함께 대통령의 개헌무산선언(4/23)
- 6.10항쟁기념 제 1회 헌법역사기행(6/10): 40여명 참가, 해설 조정찬선생
- 제 2회 헌법역사기행(6/30): 25명 참가, 해설 조정찬선생
- 제 70주년 제헌절 기념 국민개헌촉구 경향신문 전면광고 및 개헌촉구 기자회견: 경향신문 (7/17), 광화문광장
- 제 3회 헌법역사기행(7/28): 10여명 참가, 해설 연성수 공동대표
- 제 4회 헌법역사기행(9/1): 12명 참가, 해설 연성수 공동대표
- 인천 미추홀구 인권교육 5회 강좌(9/3~9/17): 40여명 참가, 강사(연성수 공동대표, 백선기 운영위원장)
- 제주여성농민회 헌법강좌(10/3): 연성수 공동대표
- 제1기 안산민주시민아카데미 헌법역사기행(10/9): 23명 참가, 백선기 운영위원장
- 대전 둔원고등학교 헌법역사기행(10/27): 21명 참가
- 전교조서울지부,서울참교육동지회와 공동주최(11/3): 제 7차 헌법역사기행, 헌정사교육 및 국민개헌원탁회의
- 전교조평창지회와 공동주최(11/4): 제 8차 헌법역사기행, 헌정사교육 및 국민개헌원탁회의 (27명)
- 제9차 헌법역사기행(12/1): 부천시민연합 회원등15명
- 사법개혁토론회와 제2차 작은 원탁회의및 2018송년회(12/15,문화공간 온)
- 제 10차 헌법역사기행(2019,1,5): 15명 참가
- 주민직접참제 확대방안토론회 및 제 3차 원탁회의(2019,1,19): 50여명 참가
- 3.1운동 100주년 기념 제 11차 헌법역사기행(2019,2,9): 24명 참가
- 민주헌정수호-5.18부정망언세력퇴출 국민토론회 주관(2019,2,25): 70여명 참가
- 3.1운동 100주년 기념 3.1혁명 특별 역사기행(2019,3,2): 50여명 참가
- 3.1운동 100주년 기념 3.1운동 특별 역사기행(2019,3,9): 130여명 참가
-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임시헌장-건국강령 계승 국민개헌안 발표회 (2019,4,11 경교장): 70여명 참가
- 고 안병하치안감을 통해본 5.18저항권의 의미 토론회(2019,5,15): 40여명 참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에 더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온라인주소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directlypower>

국민개헌안 온라인 투표 사이트 <https://www.moveon.kr>

(최근 활동 기사)

임시정부 100년, “국회 안 하는 개헌 국민이 한다”

김태현 선임기자 승인 2019.04.10

정치권 이해득실로 무산된 개헌 이어가는 시민단체 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23개 단체 국민개헌안 중간발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 개헌 노력
21대 총선 위해 국회의원 후보 발굴 및 지원 예정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오늘(1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5인이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식을 위해 중국 상하이(上海)로 출발할 예정인 가운데,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정치권이 하지 않는 개헌을 국민의 중지를 모아 직접 하자는 시민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촛불혁명 후 정부와 여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및 국민주권 원리에 충실한 새 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 주요 담론으로 제시됐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 탓에 무산된 바 있다.

개헌 무산됐지만, 촛불혁명으로 힘겹게 만들어 낸 기회 포기할 수 없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는 11일,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국민개헌원탁회의, 삼균학회 등 20여 개 개헌운동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국민개헌안 중간발표’ 및 ‘직접민주주의 연대 발대식’을 갖는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국민개헌안 발표’ 웹자보(자료: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스트레이트뉴스

“개헌이 무산됐지만, 촛불혁명으로 힘겹게 만들어 낸 국민개헌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내일 발표하는 국민개헌안은 미완이다. 하지만 중요한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새 개헌안을 완성하고, 그게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주권자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또 모을 것이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연성수 대표의 말이다.

연성수 대표는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정부 건국강령 및 유진오 박사가 기초한 제헌헌법에 명시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 요소에 주목, 지난해 2월부터 직접민주제 중심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앞장서 왔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민족평등’, ‘국가평등’과 함께 세계 헌법사에 남을 ‘인류평등’의 가치가 명시돼 있다. 특히 임시헌장 제1조에는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제가,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건국강령에는 파면권(국민소환)과 국민 입법권 등 직접민주제 요소가 규정돼 있다. 연성수 대표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연대 틀을 결성하는 목적은 직접민주제 개헌 달성”이라며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복지국가와 국민주권 원리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izlink@straightnews.co.kr

(참조)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임시헌장-건국강령 다시 세우기 제안문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 직접민주주의 연대로 완성합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지금부터 101년전 4월 11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을 제정하면서 <정강>에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을 건국의 이념으로 명시하였다.

헌법에 민족평등과 국가평등을 인류평등과 동시에 내세운 전례가 없다.

<미국> 제 1조 미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않는다.

<프랑스> 제 1조 --- 프랑스는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출신, 인종, 혹은 종교에 대한 구분없이 평등함을 보장한다

<독일> 제 3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서구 선진국 중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의 국민이 법 앞에 평등권을 보장받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임시헌장 정강에 인류평등은 물론, 민족평등과 국가평등을 동시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강대국뿐 아니라, 약소국 국민과 소수민족에게도 평등권을 부여하여 세계를 실질적인 인류 평등의 낙원으로 만들어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함이 대한민국의 건국 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세계 헌법사에서 길이 남을 일이다.

[임시헌장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919년 당시 헌법에 ‘공화국’을 명시한 나라는 많았지만,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나라는 드물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헌법 1920.2,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1920.10)

왜 임시정부는 공화제라는 용어 대신 민주공화제라는 용어를 선택했을까?

대한민국을 풀어 쓰면 ‘대한공화국’이 되므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함은 ‘대한공화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 된다.

정치 체제로서 공화제는 역사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통치되는 대의정치 체제’를 의미하므로 임시정부가 공화제 대신 민주공화제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대한공화국은 민주제+대의제로 운영되는 혼합 정치체제’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즉, 임시정부는 중대한 국가 사안은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제와 대의제를 혼합하여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프랑스 헌법을 보면 민주공화국은 직접민주제+간접민주제에 의해 운영되는 혼합 정치체제라는 분명히 알 수 있다.

프랑스 헌법 제 1조- 프랑스는 --- 민주 그리고 (사회주의)공화국이다.

제 3조에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

현대에는 많은 민주주의국가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 평상시에도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되던 20세기 초에는 헌법 제 1조에 민주+공화제를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소앙 선생의 회고록에 의하면 확신이 필요한 일이었다. 임시헌장을 기초한 조소앙이 1946년 2월 <자유신문>에 기고한 회고문을 보면 삼일 운동 전에는 민의 단결성 결여에 실망하다가 삼일 운동을 보고 비로서 인민의 힘을 확인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할 것을 확신했다는 기록이 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면서,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의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믿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민족 평등, 국가평등, 인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민주제 요소를 강화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실질적인 인류 평등을 통한 세계 평화체제의 수립,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진정한 민주공화제 실현이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념은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이르러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건국강령은 1941년, 일제 패망을 예견하고, 임시정부가 해방 후 건설할 새로운 민주국가의 모습

을 담은 청사진으로, 김원봉 등 좌익계열의 독립운동 단체와 합작으로 만들었다.

건국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주장한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골자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복지)사회국가 건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 3장 건국)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급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리동촌과 면읍과 도군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가 배합실시되고 경향각층의 극빈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 2기라 함)

(4).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좌열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영정시행함)

(가).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권(권) 피선거권 파면권 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건국강령 3장 건국, (4항) 건국기 인민의 권리와 의무조항 (가)항을 보면 인민의 생활상 기본권리로서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이 규정되어 있고, 정치적 기본권리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등 간접민주제 요소와 파면권, 입법권 등 직접민주제 요소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지) 사회국가 건설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은 물론 제헌헌법과 비교해 봐도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8세 선거권 부여, 12세 이상 고등기본교육 무상, 노동자 농민의 무상의료,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통신, 전기, 은행, 대규모 농공상기업의 국영 등 국민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향상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체제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4)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6).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제는 국민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보위함에 연관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열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행함

(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농림 수리 소택과 수상 육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기업과 성시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은 중등기업은 사영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 국영공장 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 전기 자내수와 대규모의 인쇄 출판 전영 극장등을 국유국영으로 함

(바). 노공 유공 여공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를 보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보장을 힘써 행함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7). 건국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은 국민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

하여 좌열한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수행함

(가). 교육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칙을 삼아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배합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기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여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기본교육에 관한 일체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진정한 독립은 삼중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첫째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 둘째, 양반 봉건지주의 수탈로부터 해방, 셋째. 일제와 결탁한 자본가들의 착취로부터 해방이 그것이다.

비록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이 중도파와 좌파 독립운동 진영,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 다수가 제외된 채 만들어 졌음에도 현행 헌법보다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삼중 염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에는 아래와 같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경제 질서는 사회 정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함,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전기, 수리,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함,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은 파면을 청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강령보다는 약화되었지만 직접민주제 요소를 통한 국민주권 강화, 사회국가 원리에 따른 경제 정책이 담겨 있었다.

(제헌헌법)의 핵심 내용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헌법학자의 참고 문서 10가지에 건국강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노력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제종의 규정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민주국가와 같이 정치적 법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헌법해의 10쪽)

그는 다른 글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을 국체(國體)로서의 공화국과 정체(政體)로서의 민주국이라는 개념이 합쳐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이 추구했던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복지)사회국가 건설 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임시정부가 꿈 꾸었던 사회적 민주공화국은 꿈은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한 친일세력 재기용과 남북 분단 이후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승만 독재 정권,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독재 정권은 1954년 중임 개헌을 묵인 받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제헌헌법 제 87조 등 사회적 경제 조항의 폐지 및 개정을 받아들였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5.16군사 쿠데타 후 54년 개헌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회적 경제 조항인 제 84조마저 폐지하고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도 함께 없애 버렸다. 또한 50만 서명 국민 발의권을 폐지하여 결과적 평등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의 직접 입법권을 크게 침해하였다.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의 목표는 79년 부마민주항쟁, 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 결과로 개정된 87년 현행 헌법에 제 11조 평등 조항과 제119조 경제 민주화 조항으로 일부 되살아났지만 아직 멀었다.

촛불혁명 후 복지국가 원리와 국민주권 원리에 충실한 새 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정부와 여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있었지만 자한당 등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 여당은 현실 정치의 벽을 이유로 2020년 총선 이후로 개헌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개헌원탁회의 등 국민개헌운동 단체들은 30년 만에 촛불혁명으로 힘들게 만들어낸 국민개헌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민개헌운동 단체들은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에 담긴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의 꿈을 온전히 계승할 헌법안을 직접 만들자는 국민개헌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벌였고 오늘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발표하는 국민개헌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 개헌안이 통과될 때 까지 계속 주권자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2기 국민개헌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직접민주제 개헌을 달성하고, 내년 21대 국회에서 민주적 사회국가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연대들을 결성할 것이다.

우리과 뜻을 같이 할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 당선시키는 국민정치운동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101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100주년 기념,
임시헌장, 건국강령 계승 국민개헌안 발표회 참가자 일동

이 제안문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시려면 moveon.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MEMO